

발 간 등 록 번 호

33-9750040-000466-01

사회변화와 헌법

2024-G-1

기업의 기후공시에 관한 헌법적 연구

- 미국에서의 논의 소개를 포함하여 -



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기업의 기후공시에 관한 헌법적 연구

- 미국에서의 논의 소개를 포함하여 -

연구책임자 : 박 주 영 책임연구관(제도연구팀)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구성	5

II. 기후공시제도 개관 / 6

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6
가. 정의와 목적	6
나. ESG 투자의 확산	6
다. ESG 정보공시 도입 배경	7
2. 기후공시 도입 배경	8
3. 기후공시 관련 국제 기준	11
가. TCFD 기후변화 관련 재무·금융정보 공시 권고안	11
1) 모든 부문 지침	12
2) 특정 부문 보충지침	13
나. 온실가스 프로토콜	14
4. 국내 현황	17
가. 법률	1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
가) 개관	17
나) 기후공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발의안	18
(1) 김성주의원 대표발의안	18
(2) 유의동의원 대표발의안	19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19
나. 거래소 자율공시제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22
다. 금융감독기관 기준: 수립 예정	22

II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공시규칙에 관한 (헌)법적 논의 / 24

1.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규칙 도입 배경	24
2.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법적 지위와 규칙제정권	25
3. 최종 기후공시규칙의 주요 내용	26
가. 비재무정보	26
나. 재무제표 정보	27
다. 초안과의 차이	28
라. 위반시 제재	29
4.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공시규칙 관련 (헌)법적 쟁점	29
가. 개관	29
나. 기업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	30
1) 상업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30
2) 연방대법원이 강요된 상업적 표현에 적용하는 심사기준	33
가) 상업적 표현 제한에 적용하는 심사기준 개관	33
나) 강요된 상업적 표현에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자우더러 조건과 최근 연방대법원 판례	33
(1) 자우더러 대 오하이오 주대법원 징계위원회실 판결에 제시된 조건과 심사기준	33
(2) 가족생명옹호자협회 판결에 제시된 자우더러 조건의 해석	35
(가) 가족생명옹호자협회 판결의 배경과 개요	35
(나) 가족생명옹호자협회 판결에 제시된 반대의견	37
(3) 기후공시규칙의 경우	38

3) 소결	40
다. 기후공시규칙이 부재하거나 불충분하여 위법하다는 의견	40
1) 1970년대 진행되었던 소송의 개요	40
2) 2024년 제기된 소송의 개요	41
가) 시에라클럽이 소송을 제기한 배경	41
나) 시에라클럽의 주장	42
(1)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역행	42
(2) '중요성(materiality)' 조건	43
라. 소결	43

IV. 국내 기후공시제도의 헌법적 쟁점 / 45

1. 기후공시제도의 목적	45
가. 서설	45
나. 좌초자산	47
2. 기후공시제도 도입 전 - 국민의 환경정보접근권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49
가. 서설: 기후공시제도와 국민의 기본권	49
나. 환경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로서 환경정보접근권 ...	50
1)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환경권	50
2) 「환경정책기본법」	51
3) 환경 정보 접근, 대중 참여, 정의 접근에 관한 협약 (오르후스협약) ..	52
4) 소결	54
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54
3. 기후공시제도 도입 후 - 기업의 직업의 자유	56
가. 기후공시제도로 인하여 제한될 기본권	56
1) 서설	56
2)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56
3) 소결	59

나. 기후공시제도의 위헌성 판단 시 고려사항	60
1) 기업의 헌법상 지위	60
가) 서설	60
나) 한국 헌법과 기업의 헌법화	61
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62
라) 회사의 목적으로 '주주후생 극대화'	63
2) 헌법 제35조 제1항: 기업의 환경보전 노력의무	64
3) 경제헌법	65
4) 법익균형성 판단 시 고려사항	67
다. 소결	68

V. 결론 / 69

■ 참고문헌	71
--------------	----

초 록

기후공시제도는 국가가 기업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적·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후공시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최근 기후공시규칙(Climate Disclosure Rule)이 확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현) 법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먼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규칙이 기업의 소극적 상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기후공시규칙이 불충분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소개한다. 이어서 우리나라 헌법 체계 하에서 기후공시제도의 목적과, 기후공시제도 도입 전과 후의 헌법적 쟁점을 나누어 살펴본다. 기후공시제도 도입 전에는 국민의 환경(정보접근) 권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며, 기후공시제도 도입 후에는 기업의 직업의 자유, 기업의 환경보전 노력의무, 경제헌법의 해석 등이 문제될 수 있다. 헌법적 쟁점을 검토한 결과, 국가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라는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는 기후공시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대규모 산업활동의 주체인 기업은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주제어: 기후공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규칙(Climate Disclosure Rule), 환경정보 접근권, 직업의 자유, 환경보전 노력의무

약어 표

ESG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FSB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IFRS	재단 국제회계기준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SSB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CFD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UNEP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FI	유엔 환경계획의 재정 이니셔티브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UNGC	유엔 글로벌 컴팩(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 PRI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23. 05. 04. 이후 매일¹⁾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일별(日別)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큰 차이로 상승하기도 하였다.²⁾ 기후 과학자의 97%는 인간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일으킨다는 데 동의하며,³⁾⁴⁾ 그 중에서도 특히 화석연료 연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⁵⁾⁶⁾

전 지구 지표온도의 상승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해수면 상승이나 남극 빙상 붕괴, 생물 다양성의 손실 등 일부 변화는 불가피하거나 돌이킬 수 없으며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급격하고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진다.⁷⁾ 인간의 활동이 초래한 온난화를 제한하려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이 되어야 하며, 현재의 화석연료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이산화탄소 잠재배출량은 1.5°C 목

1) 2024. 05. 08. 기준이다.

2) Matt McGrath / Mark Poynting / Justin Rowlett, Climate change: World's oceans suffer from record-breaking year of heat, BBC, 2024. 05. 08., <https://www.bbc.com/news/science-environment-68921215> (최종방문일 2024. 05. 13.)

3) NASA, Do scientists agree on climate change?, NASA FAQ, <https://science.nasa.gov/climate-change/faq/do-scientists-agree-on-climate-change/> (최종방문일 2024. 05. 13.)

4)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이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라고도 한다)에 따르면, 1850-1900년 이후 지구 온도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1.1°C 상승하였다. IPCC, Climate change widespread, rapid, and intensifying - IPCC, IPCC, <https://www.ipcc.ch/2021/08/09/ar6-wg1-20210809-pr/> (최종방문일 2024. 05. 13.)

5) 미국 국립연구회(National Research Council) 역시 2011년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 지구 기후의 큰 방향을 결정짓는 요인이며 ... 대기 중 탄소가 지구와 향후 세대에 매우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밝히었다. 인소영/박기영, 기후변화의 경제학, 한국경제학보, 제28권 제1호, 2021, 146면 참조.

6) NASA, Scientific Consensus, NASA, <https://science.nasa.gov/climate-change/scientific-consensus/> (최종방문일 2024. 05. 13.)

7)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 승인', 외교부 공동보도자료, 2023. 03. 20., 3면 참조.

표⁸⁾를 달성하기 위한 잔여 탄소 배출허용량을 초과한다.⁹⁾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빠르게 줄고 있기에, 모든 부문 및 시스템이 신속하게 전환되어야 한다.¹⁰⁾ 이러한 전환에 국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¹¹⁾

최근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 공시 및 인권 실사(Due Diligence) 제도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특히 기후변화는 자연재해, 생태계 파괴 등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가 기후변화 원인의 주범인 기업에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부과하고 있다.¹²⁾ 기후공시제도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기업에 부과하려는 움직임 중 하나에 해당하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켜온 기업의 경영활동에 변화를 가져온다.

해외에서는 이미 기후공시의 제도화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후공시 제도 도입에 관한 헌법적 논의도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4년 3월 최종 기후공시규칙(Climate Disclosure Rule)을 발표한 이후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며, 기후공시규칙의 합법성 여부가 법원에서도 다투어지고 있다. 조지

8) 1.5°C는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설정한 온도 상승 제한선이다. 전 세계 195개국은 2015년 파리협정(기후변화를 인류가 직면한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뜻을 모은 국제조약인 ‘UN기후변화협약’의 2020년 이후를 담당하게 될 하부 조약이다)을 통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C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장기목표 하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관련 법령, 법제처, 2022. 04. 21., https://world.moleg.go.kr/web/dta/lgsI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CTS_SEQ=50035&AST_SEQ=3891&ETC=1 (최종방문일 2024. 05. 30.); 외교부, 기후변화협상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 외교정책, https://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 (최종방문일 2024. 05. 30.); 기획재정부, 신기후체제(파리기후협약), 시사경제용어사전,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641> (최종방문일 2024. 05. 31.)

9)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 승인’, 외교부 공동보도자료, 2023. 03. 20., 3-4면 참조.

10)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 승인’, 외교부 공동보도자료, 2023. 03. 20., 4면 참조.

11)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 승인’, 외교부 공동보도자료, 2023. 03. 20., 4면 참조.

12) 정준희, ‘의무’가 된 ESG…기후 정보 공시 시대 ‘성큼’, 환경ESG, 2023년 1월호, 26면 참조.

아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알래스카주 등 10개 주와 에너지기업은 기후공시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였다.¹³⁾ 반면 매사추세츠주·뉴욕주 등 16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기후공시규칙을 지지하며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있다.¹⁴⁾ 또한 환경단체는 최종 발표된 기후공시규칙 내용이 2022년 3월 발표되었던 초안에 비하여 지나치게 완화되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자본형성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할 증권거래위원회의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¹⁵⁾

위 기후공시규칙과 별도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3년 10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고, 기업의 가치사슬¹⁶⁾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인 Scope 3¹⁷⁾을 공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을 통과시켰다. 뉴욕주, 일리노이주, 매사추세츠주, 워싱턴주 등 다른 주(州)도 기후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중이다.¹⁸⁾

유럽연합 의회 역시 2024. 04. 24.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 지침’(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을 최종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위 지침의 적용을 받는 유럽연합 역내외 기업은 자신과 자신의 자회사, 가치사슬과 관련된 협력업체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인권·환경에 관한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해결해야 한다(동지침 제6

13) Perry Cleveland-Peck / Dylan Tokar, U.S. Appeals Court Temporarily Halts SEC Climate-Disclosure Rules,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03. 18., <https://www.wsj.com/articles/u-s-appeals-court-temporarily-halts-sec-climate-disclosure-rules-456f2f4c> (최종방문일 2024. 05. 30.); 법무법인(유) 화우 ESG 센터, SEC,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확정 - Scope 3 의무 제외하고, 중대성 기준 확대를 통해 전반적 완화 -, Legal Update, 2024, 3면 참조.

14) Andrew Ramonas, Democratic Attorneys General Rally Behind SEC Climate Rule (1), Bloomberg Law News, 2024. 04. 05., <https://news.bloomberglaw.com/esg/democratic-attorneys-general-to-back-sec-in-climate-rule-defense> (최종방문일 2024. 05. 30.)

15) Sierra Club, ‘Sierra Club, Earthjustice Lawsuit Challenges SEC’s Weakened Climate Risk Disclosure Rule’, Press Release, 2024. 03. 13., <https://www.sierraclub.org/press-releases/2024/03/sierra-club-earthjustice-lawsuit-challenges-sec-s-weakened-climate-risk> (최종방문일 2024. 05. 30.)

16) 가치사슬이란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사용하고 의존하는 자원 및 관계의 전체 범위’를 의미한다.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현재, 기업들은 그들의 가치사슬을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어떤 기업도 독자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낼 수 없다. 기획재정부,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시사경제용어사전,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652> (최종방문일 2024. 08. 09.)

17) 본 연구보고서 15면 참조.

18) 김태한, [정책 인사이트 트럼프의 ESG 공약 ②] 불안한 SEC 기후 공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경ESG, 2024년 2월호, 127면 참조.

조 내지 제8조).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계획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동지침 제15조).

우리나라에서는 기후공시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 등 경제주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자산손실 등의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동법 제50조 제2항). 또한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58조 제1항). 금융위원회는 2021년 환경정보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힌 후, 2024년 4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의 주요내용만을 발표한 상태이다.

기후공시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한 경우, 국가의 부작위로 인해 국민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2023년에는 기후공시에 관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된 바 있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일반 소비자이자, 기후공시를 통해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알 수 있다면 기업에 투자를 할 의사가 있는 예비 투자자이었다. 청구인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2항¹⁹⁾이 기후공시에 관한 최소한의 내용도 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포괄위임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환경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²⁰⁾ 반면 기후공시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가가 기업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적·비재무적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30호, 2016. 3. 29.]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 도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 헌재 2023. 11. 7. 2023헌마 1110, 결정문 참조.

정보를 공시할 의무를 지운다는 점에서 기업은 직업의 자유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까지 인식되는²¹⁾ 지금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인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국가가 ‘기후위기 타개를 위시한 환경보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시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하여 기업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적·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할 의무를 지우는 기후공시제도는, 이러한 배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헌법적 관점에서 기후공시제도를 검토한 국내 선행연구가 많지 아니하다. 이에 본 보고서의 목적은, 앞서 제도를 도입한 미국에서의 (헌)법적 논의와 대한민국 헌법 체계 안에서의 논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구성

연구 대상은 기후공시제도이며,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이를 ‘국가가 기업에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적·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라고 본다. 공시란, 공개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상장기업이 법적 의무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서론인 I장과 결론인 V장을 제외하고 크게 세 장으로 나뉜다. 기후공시제도를 개관하는 II장에서는 기후공시제도 도입 배경, 국제기구 이니셔티브 기후공시 권고안, 기후공시 기준에 쓰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분류 방식 등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도입한 기후공시규칙의 주요 내용과 이를 둘러싼 (헌)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IV장에서는 기후공시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한 경우와, 기후공시제도가 도입될 경우를 나누어 우리나라 헌법 체계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한다.

21) 한승희, [글로벌 이슈] ‘기후변화’, 이제 ‘기후 위기’라 말하자, 더나은미래, 2019. 06. 12., <https://www.futurechosun.com/archives/41900> (최종방문일 2024. 05. 30.)

II. 기후공시제도 개관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기후공시제도를 ‘국가가 기업에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적·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라고 본다. 기후공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공시규칙처럼 단독으로 제정되기도 하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ESG, 비재무정보(Non-financial information) 공시 기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기후공시는 ESG공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먼저 ESG공시와 관련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기후공시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과 기후공시 관련 국내 현황을 살펴본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 정의와 목적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각 영어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이다. 이는 투자자나 기업이 투자 또는 경영의 주체로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로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한다.²²⁾ ESG는 투자자와 기업의 활동을 통해 인류가 직면하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인권 보호,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빈곤 해소, 양성 평등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²³⁾

나. ESG 투자의 확산²⁴⁾

1990년대 말까지만 하여도 윤리적인 투자는 재정적인 이익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가설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유엔 환경계획(이하 ‘UNEP’라 한다)과 유엔 글로벌 컴팩(이하

22) 김병연/박종철/정용채, ESG 경영과 법률, 정독, 2021, 4면; 이은선/최유경, ESG 관련 개념의 정리와 이해, 이슈페이퍼 21-19-④, 한국법제연구원, 2021, 11면 참조.

23) 정준혁, ESG와 회사법의 과제, 상사법연구, 제40권 제2호, 2021, 13면 참조.

24) 이일청, 유엔 시스템과 기업, 기업시민리서치, 8호, 2020, 5면 참조.

‘UNGC’라 한다)이 2000년대 초반에 ESG 논의를 본격화시켰다. 유엔 환경계획의 재정 이니셔티브(이하 ‘UNEP FI’라 한다)가 2005년 한 글로벌 로펌²⁵⁾과 협력하여, ESG와 투자의 기준 관계에 관한 법적 해석 보고서(A legal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to institutional investment)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어떻게 투자전략에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의 요소를 내재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유엔 내에서 투자 기준 분석에 ESG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투자를 위탁받은 이의 ‘수탁자 책무’(fiduciary duty)에 해당한다는 규범을 정립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곧 글로벌 규범으로 해석되기 시작했고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ESG 중심의 투자를 가능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 ESG 정보공시 도입 배경

UNEP FI와 UNGC가 2006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투자 결정에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UN PRI’라 한다)을 개발하였다.²⁶⁾²⁷⁾ UN PRI 도입을 기점으로 주로 자율적으로 공시되었던 ESG 정보가 제도적으로 공시되기 시작하였다.²⁸⁾ UN PRI의 6가지 원칙은 ‘(1)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에 ESG 이슈를 반영한다 (2) 투자철학 및 운용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자가 된다 (3) 투자 대상에게 ESG 이슈에 대한 정보공시를 요구한다 (4) 투자 산업에서 본 원칙의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5) 본 원칙을 이행할 때 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6) 본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활동과 진행사항을 보고한다’이다.²⁹⁾³⁰⁾ 이로써 UN PRI에 가입한 투자자는 기업에게 충실한

25)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26) UNGC, Integrate th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https://unglobalcompact.org/take-action/action/responsible-investment> (최종방문일 2024. 02. 27.)

27) 유엔 책임투자원칙상 ‘책임투자’의 개념은 ESG이슈를 고려함으로써 투자를 통한 장기적인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투자 자체의 책임이며, 이를 통해 수반되는 지속가능한 사회 촉진 기능은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노희진 외, 사회적책임투자의 원칙과 적용, 자료집, 한국증권연구원, 2006, 5면 참조.

28) 오성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정보에 관한 공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 103면 참조.

29) UN PRI, What are th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https://www.unpri.org/about-us/what-are-the-principles-for-responsible-investment?> (최종방문일 2024. 02.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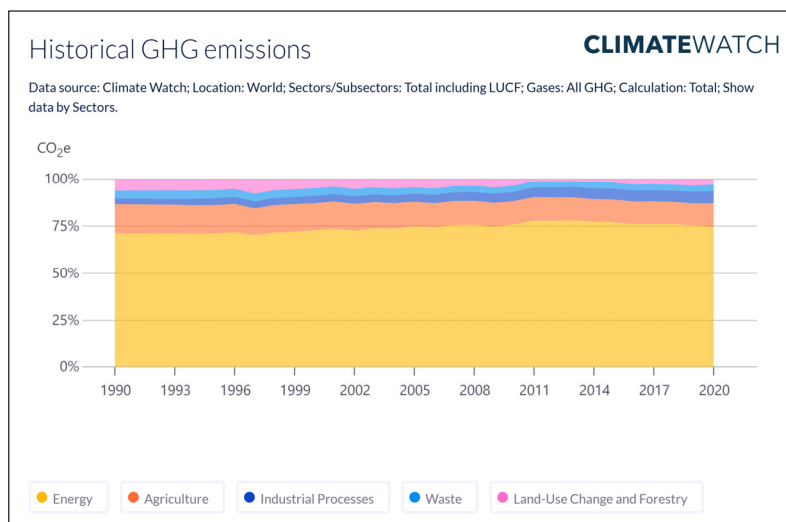
30) 노희진 외, 사회적책임투자의 원칙과 적용, 자료집, 한국증권연구원, 2006, 6-7면 참조.

ESG 정보공시를 요구하게 되었고, 기업도 ESG 관련 투자 판단에 유용한 정보를 공시할 유인이 생겼다.³¹⁾ 예를 들어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Amundi는 2006년에, 세계 최대 국부펀드 중 하나인 Norwegian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도 2006년에, 미국 최대 연기금인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CalPERS)도 2006년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BlackRock은 2008년에, 또 다른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Legal & General Investment Management은 2010년에,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의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는 2015년에 각 UN PRI에 가입하였다.³²⁾

2. 기후공시 도입 배경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강조되면서 ESG 중에서도 ‘기후’공시의 필요성이 부상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간략히 살펴본다.

〈도표 1.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부문별 비중 추이〉³³⁾



31) 김경일, 일본의 ESG 정보공시와 그 시사점,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99호, 2022, 1면 참조.

32) UN PRI, Signatory directory, <https://www.unpri.org/signatories/signatory-resources/signatory-directory> (최종방문일 2024. 08. 27.)

33) Climate Watch, Historical GHG Emissions, World Resources Institute, 2022, <https://www.climatewatchdata.org/ghg-emissions> (최종방문일 2024. 02. 28.) 참조.

Climate Watch³⁴⁾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5%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어 다른 부문에 비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도표 1. 참조). 이 ‘에너지 부문’에는 전기 및 열 생산, 교통·운송, 제조·건설, 기타 연료 연소가 모두 포함된다.³⁵⁾ 또한 산업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1990년 이후 203% 증가하였다.³⁶⁾ 산업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에너지 생산 자체가 기업의 산업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업의 역할은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화석연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위적(anthropogenic) 온실가스 배출원이다.³⁷⁾ 화석연료 산업과 제품은 전 세계 산업부문 온실가스의 91%를 차지했으며, 전체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였다.³⁸⁾ 또한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상위 25개의 기업 및 국가가 전 세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51%을, 100개의 기업 및 국가가 71%를 차지하였다.³⁹⁾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기업 및 국가가 1988년부터 발생시킨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변화에 크게 기여했을 만큼 규모가 크다.⁴⁰⁾ 증장기적으로 이러한 기업과 국가의 활동은 전 세계의 에너지 전환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기후변화 관련 규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⁴¹⁾

에너지 전환은 경제 주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활동이 기업의 경영 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짐에 따라 성과

34)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Climate Watch, About Climate Watch, World Resources Institute, <https://www.climatewatchdata.org/about/description> (최종방문일 2024. 02. 29.) 참조.

35) World Resources Institute, 4 Charts Explain Greenhouse Gas Emissions by Countries and Sectors, 2022, <https://www.wri.org/insights/4-charts-explain-greenhouse-gas-emissions-countries-and-sectors> (최종방문일 2024. 02. 28.) 참조.

36) World Resources Institute, 4 Charts Explain Greenhouse Gas Emissions by Countries and Sectors, 2022, <https://www.wri.org/insights/4-charts-explain-greenhouse-gas-emissions-countries-and-sectors> (최종방문일 2024. 02. 28.) 참조.

37) Paul Griffin, The Carbon Majors Database CDP Carbon Majors Report 2017, CDP Report, 2017, p.7

38) 2015년 기준이다. Paul Griffin, The Carbon Majors Database CDP Carbon Majors Report 2017, CDP Report, 2017, p.7

39) 2015년 기준이다. Paul Griffin, The Carbon Majors Database CDP Carbon Majors Report 2017, CDP Report, 2017, p.8

40) Paul Griffin, The Carbon Majors Database CDP Carbon Majors Report 2017, CDP Report, 2017, p.8

41) Paul Griffin, The Carbon Majors Database CDP Carbon Majors Report 2017, CDP Report, 2017, p.8

에 민감한 투자자들은 기업에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였다.⁴²⁾ 하지만 기업들이 초창기에 투자자에게 제공한 기후변화 관련 정보는 그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투자자가 투자 지표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⁴³⁾ 또한 정보의 이용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면서 기업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고, 정보 제공자인 기업과 이용자 모두 혼란스러워졌다.⁴⁴⁾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기구 이니셔티브 공시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중 하나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공시 권고안이다.⁴⁵⁾

42) 정준희, ‘의무’가 된 ESG…기후 정보 공시 시대 ‘성큼’, 환경ESG, 2023년 1월호, 26면 참조.

43) 정준희, ‘의무’가 된 ESG…기후 정보 공시 시대 ‘성큼’, 환경ESG, 2023년 1월호, 26면 참조.

44) CDP et al., Statement of Intent to Work Together Towards Comprehensive Corporate Reporting, 2020, p.2

45)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투자자·기업·도시·주·지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CDSB(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천연자원과 금융자본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기업보고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업과 환경단체로 구성된 국제 컨소시엄),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업 등 조직이 자신의 영향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국제기준을 제공하는 국제기구), IIRC(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기업이 투자자 및 기타 재무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적으로 중요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는 2020년 9월 기후공시의 통합 기준(comprehensive corporate reporting)을 공동으로 제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후 위 5개의 국제기구 이니셔티브는 2020년 12월 TCFD가 제시한 요소를 포함한 기후공시 기준을 원형(prototype) 형태로 국제회계기준 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이하 ‘IFRS 재단’이라 한다. 동재단은 국제회계기준을 개발·공표하는 비영리법인이며, 국제회계기준은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사용 중인 회계기준으로,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기준이다.)에 제공하고, IFRS 재단이 향후 개발할 공시 기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IFRS 재단은 2021년 11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이하 ‘ISSB’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ISSB는 2023년 6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기준인 IFRS S1(*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과 IFRS S2(*Climate-related Disclosures*)를 발표하였다.

CDP et al., Statement of Intent to Work Together Towards Comprehensive Corporate Reporting, 2020, p.17; 기획재정부, IFRS, 시사경제용어사전,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34> (최종방문일 2024. 02. 28.) ; IFRS, IFRS S1 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https://www.ifrs.org/issued-standards/ifrs-sustainability-standards-navigator/ifrs-s1-general-requirements/#about> (최종방문일 2024. 02. 28.) ; IFRS, IFRS S2 Climate-related Disclosures, <https://www.ifrs.org/issued-standards/ifrs-sustainability-standards-navigator/ifrs-s2-climate-related-disclosures/> (최종방문일 2024. 02. 28.) ; 김정훈,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호환성 ① [더 나은 세계, SDGs], 세계일보, 2023. 08. 27.,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827508527> (최종방문일 2024. 02. 28.) 참조

3. 기후공시 관련 국제 기준

가. TCFD 기후변화 관련 재무·금융정보 공시 권고안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경제와 산업 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요하므로 각국의 금융 정책결정자는 금융 불안정과 자산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기후변화가 국제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⁴⁶⁾ 이에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2015년 4월 금융안정위원회⁴⁷⁾(Financial Stability Board, 이하 ‘FSB’라 한다)에 ‘금융 부문이 기후 문제를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관계자들을 소집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따라 FSB는 2015년 12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CFD’라 한다)를 설립하였다.⁴⁸⁾ 기후변화와 관련된 특정 위험요인을 적절히 평가하고 값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권고안을 개발하기 위함이었다.⁴⁹⁾⁵⁰⁾⁵¹⁾ TCFD 기후변화 관련 재무·금융정보 공시 권고안(이하 ‘TCFD 권고안’이라 한다)은 미국 기후공시규칙을 포함하여 여러 기후공시제도의 바탕이 되었으며, 기후변화가 기업의 재무 상태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드러날 것을 강조한다는 점과 다양한 산업에 걸쳐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TCFD의 목표 중 하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기회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잘 드러내는 공시 권고안, 즉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⁵²⁾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은, 기후변화로 인해 해당 기업이 마주한 특정한 위험과 기회 그리고 이러한 위험·기회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아래 도표 2. 참조).⁵³⁾

46) TCFD,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17, p.iii

47) “FSB는 금융위기 예방 및 대처방안 연구, 국제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에 대한 국제협력 등을 위해 설립되었다. ... 각국 중앙은행, 재무부, 감독기구 등이 금융안정위원회 회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회원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위원회(FSB),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40> (최종방문일 2024. 02. 29.) 참조.

48) FSB, FSB to establish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Press release, 2015. 12. 04., p.2

49) FSB, FSB to establish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Press release, 2015. 12. 04., 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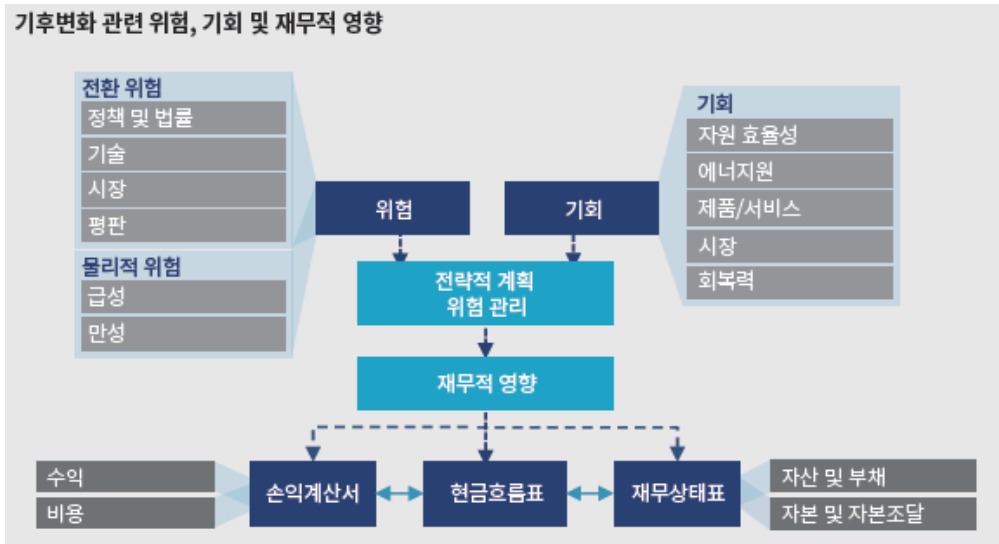
50) TCFD, About, <https://www.fsb-tcfid.org/about/#the-climate-challenge> (최종방문일 2024. 02. 29.) 참조.

51) TCFD는 2023년 10월 마지막 보고서 발표와 동시에 그 임무를 완수하고 해산하였고, FSB는 기업의 기후공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IFRS 재단이 맡아달라고 요청하였다.

52) TCFD, 번역본,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의 권고안, 2017, 8면 참조.

53) TCFD, 번역본,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의 권고안, 2017, 8면 참조.

〈도표 2.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기회 및 재무적 영향〉⁵⁴⁾



TCFD 권고안은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부문 지침’과, 특정 산업에 부가적으로 적용되는 ‘특정 부문 보충지침’으로 나뉜다.⁵⁵⁾

1) 모든 부문 지침

TCFD는 모든 부문 지침에서 총 11개 항목에 대한 공시를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권고한다. 첫째 ‘ 지배구조 ’ 영역에서는 이사회 의 감독, 경영진의 역할, 둘째 ‘ 전략 ’ 영역에서는 기업이 파악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 이러한 리스크와 기회가 기업의 사업과 전략에 미치는 영향, 기업 전략의 회복탄력성, 셋째 ‘ 위험 관리 ’ 영역에서는 리스크 식별 과정, 리스크 관리 과정, 기업 전반 리스크 관리에 통합되는 방법, 그리고 넷째 ‘ 지표 및 목표 ’ 영역에서는 리스크 평가에 사용된 지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리스크, 리스크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목표가 권고안에 포함된다(아래 도표 3. 참조).⁵⁶⁾

54) TCFD, 한국공인회계사회 옮김, 기후변화 관련 재무공시에 관한 태스크포스의 권고안 이행, 2021, 9면 참조

55) TCFD, 한국공인회계사회 옮김, 기후변화 관련 재무공시에 관한 태스크포스의 권고안 이행, 2021, 6면 참조

56) TCFD,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17, p.14

〈도표 3. TCFD의 권고안〉⁵⁷⁾

권고안 및 이를 뒷받침하는 권장 공시내용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는 조직의 지배구조 공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실제 및 잠재적 영향 정보가 중요한 경우, 이 영향을 공시	조직이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방법을 공시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평가와 관리에 사용하는 지표 및 목표 정보가 중요한 경우, 이 정보를 공시
권장 공시내용	권장 공시내용	권장 공시내용	권장 공시내용
a) 이사회가 수행하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설명	a) 조직이 단기, 중기, 장기 기간에 대해 파악한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설명	a) 조직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의 식별 및 평가 프로세스를 설명	a) 조직의 전략 및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조직이 사용하는 지표 공시
b)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평가와 관리에서 경영진이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	b)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b) 조직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설명	b) 스코프 1 및 스코프 2, 그리고 적절한 경우,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위험 공시
	c) 2°C 이하 시나리오를 포함해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를 감안할 때, 조직 전략이 가지는 회복력에 대한 설명	c)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에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설명	c) 조직이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목표, 그리고 목표 대비 성과를 설명

2) 특정 부문 보충지침

TCFD는 특정 부문에 속한 기업이 기후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도 권고한다.⁵⁸⁾ ‘특정 부문’은 금융 부문과 비금융 부문으로 나뉜다. 금융 부문에는 은행, 보험회사, 자산소유사, 자산운용사가 포함되며, 비금융 부문에는 에너지⁵⁹⁾, 교통·

57) TCFD, 한국공인회계사회 옮김, 기후변화 관련 재무공시에 관한 태스크포스의 권고안 이행, 2021, 15면 참조.

58) TCFD,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21, p.6

59) 화석연료 또는 전기에너지를 추출, 가공, 생산하고 경제의 다른 부문에 유통하는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TCFD,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21, p.63

운송⁶⁰⁾, 원자재 및 건축, 농산물·식품·임산물이 포함된다.⁶¹⁾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모든 부문 지침 중 ‘지표 및 목표’ 영역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리스크’를 공시할 때, 대출 및 기타 금융증개업 활동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공시할 것이 권고된다.⁶²⁾ 에너지 기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투자 전략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도 공시할 것이 권고된다.⁶³⁾

나. 온실가스 프로토콜

온실가스 프로토콜(Greenhouse Gas Protocol 혹은 GHG Protocol)은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⁶⁴⁾와 세계지속가능기업위원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⁶⁵⁾가 공동으로 제정한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을 위한 국제적인 표준이다. 기후공시제도에 쓰이는 방식인 Scope 1, 2, 3으로 온실가스를 분류하는 방식은 온실가스 프로토콜이 제정한 표준 분류 체계에 따른 것이다.

직접배출량을 의미하는 Scope 1 배출량이란, 기업이 직접 소유하거나 제어하는 공정, 시설 또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당해 기업 내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Scope 1 배출량에 포함된다. 간접배출량에 해당하는 Scope 2 배출량이란, 기업이 구매한 전력, 열, 냉각수 등의 에너지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당해 기업이 구매한 전력 생산에 의해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Scope 2 배출량에 포함된다.

60) 항공 화물 운송, 항공 여객, 해상 운송, 철도 운송, 트럭 운송, 자동차 운송 등이 포함된다. TCFD,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21, p.65

61) TCFD,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21, p.7

62) 데이터 및 방법론상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TCFD,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21, p.29

63) TCFD,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21, p.64

64) 존 D. 와 캐서린 T. 맥아더 재단(John D. and Catherine T. MacArthur Foundation)으로부터 설립 기금을 지원받아 1982년 미국 워싱턴 D.C.에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환경 및 개발 관련 정책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World Resources Institute, About Us, <https://www.wri.org/about/history> (최종방문일 2024. 06. 10.) 참조.

65) 지속가능한 경영이라는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1995년 설립된 산업계 협의체이다.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ur History, <https://www.wbcsd.org/Overview/Our-history> (최종방문일 2024. 06. 10.) 참조.

Scope 2 배출량 외의 모든 간접배출량인 Scope 3이란,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나 Scope 1, 2 배출량에 해당되지 않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기업의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영역을 포함하며, 예를 들어 원자재 생산 및 가공, 제품 수송 및 유통, 고객의 제품 사용, 폐기물 처리 등의 활동으로 인한 배출량이 Scope 3 배출량에 포함된다. 다른 예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고객(기업)이 금융기관의 대출 또는 투자를 이용하여 진행한 사업에서 발생시킨 배출량이 해당 금융기관의 Scope 3 배출량에 포함된다.

〈도표 4. Scope 1, 2, 3 정의 및 세부 내용〉⁶⁶⁾

종류		정의 및 세부 카테고리	
직접배출	Scope 1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산에서 기인한 배출량	
간접배출	Scope 2	기업이 사업 운영을 위해 제3자로부터 구매 및 취득하여 소비한 전력, 열에너지	
	Scope 3	기업 통제권 밖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고 Scope 2를 제외한 모든 간접배출	
		업스트림(Upstream)	다운스트림(Downstream)
		1. 기업이 구매한 재화 및 서비스 2. 자본재 3. 연료/에너지 4. 기업이 구매한 서비스의 운송/유통 5. 사업 운영에 기인한 폐기물 6. 임직원 출장 7. 임직원 통근 8. 기업이 임차한 자산	9. 기업이 판매한 제품 및 서비스의 운송/유통 10. 판매된 제품 가공 11. 판매된 제품 사용 12. 판매된 제품 폐기 13. 타 업체에 임대해 준 자산 14. 프랜차이즈 15. 투자

자료: GHG Protocol(2013), "Technical Guidance for Calculating Scope 3 Emissions(version 1.0)"

기후공시제도는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적·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할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는 제도이다. 직접배출량에 더해 간접배출량도 중요한 이유는, 경제주체의 결정과 활동이 경제체제 내에서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접배출량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투자는 화석연료를 채굴·가공하는 사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⁶⁷⁾ 기업이 금융기관의 투자 없이 화석연료를 채굴·가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⁶⁸⁾ 때문

66) 이승준/이승주, 지속가능성 공시의 Scope 3 배출량 관련 이슈, KIRI 리포트 이슈분석, 보험연구원, 2024, 12면 참조.

67) 대한민국 주요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 석유·천연가스 사업 금융제공 현황을 밝히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보고서로, 운세중/오동재/팽원/송지연,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 화석연료 투자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 기후솔루션, 2021 참조.

68) 일례로 호주 북부의 티모르 해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는, 해상에서 진행되는 가스전 사업 특성상 대형 해양플랜트인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이다. 공시 대상이 직접배출량에 한정된다면, 금융기관의 배출량에는 금융기관의 투자로 가능해진 화석연료 채굴·가공 사업의 배출량까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즉, 직접배출량을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았을 수치가 Scope 3 간접배출량을 통해 밝혀지는 것이다. 간접배출량이 드러나야 온실가스 배출 실태를 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통해 간접배출량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이용객수로 세계 2위인⁶⁹⁾ 런던 히드로공항 확장 과정에서 기후변화가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었다. 영국 하원은 2018년 히드로공항을 확장하기 위하여 제3활주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영국 항소법원은 2020년 이러한 확장 건설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⁷⁰⁾ 정부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서명한 만큼, 공항을 확장하는 건설 결정 과정에서 영국의 기후변화 관련 책무를 고려하였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법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⁷¹⁾ 영국 항소법원의 판결로 인해 히드로공항 제3활주로 건설에 차질이 생겼고, 히드로공항 제3활주로 건설은 현재까지도 계획 단계에 멈추어 있다.⁷²⁾⁷³⁾ 한편 이는 우리나라 금융투자업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한국투

and Offloading)설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FPSO 설비 건조에 투자함으로써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참여한 금융기관에 관한 보고서로, 오동재/김소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바로사 가스전 FPSO 설비에 금융 제공 증인 은행들, 보고서, 기후솔루션, 2023 참조.

- 69) 2022년 국제선 기준이다. 안중현, 국제선 이용객 숫자 세계 1위 공항은, 조선경제, 2023. 06. 21.,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3/06/21/IC33XIJBVACRBBXL2VH6NHJ4Q/> (최종방문일 2024. 05. 14.)
- 70) 박대한, 영국 법원 “환경영향 고려 안했다”...히드로 제3활주로 건설 제동, 연합뉴스, 2020. 02. 27.,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7208500085> (최종방문일 2024. 05. 14.)
- 71) Rob Picheta, ‘Climate activists just blocked plans to expand Heathrow, one of the world’s biggest airports’, CNN, 2020. 02. 27., <https://edition.cnn.com/travel/article/heathrow-airport-third-runway-ruling-scli-intl/index.html> (최종방문일 2024. 05. 14.)
- 72) Charlotte Ryan, Heathrow to Decide on Third Runway After Return to Profit, Bloomberg, 2024. 02. 2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2-21/heathrow-to-decide-on-third-runway-plans-after-return-to-profit> (최종방문일 2024. 05. 14.)
- 73) 영국 대법원은 영국 정부가 영국의 기후변화 책무를 고려하였다고 보아 항소법원의 판단을 뒤집었다. 영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히드로공항 확장 건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수익성 등에 문제가 생겨 제3활주로 건설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Sam White, Supreme Court overturns block on Heathrow’s expansion, White & Case LLP, 2021. 01. 25., <https://www.whitecase.com/insight-alert/supreme-court-overturns-block-heathrows-expansion> (최종방문일 2024. 05. 14.) ; Rob Picheta, Climate activists just blocked plans to expand Heathrow, one of the world’s biggest airports, CNN, 2020. 02. 27., <https://edition.cnn.com/travel/article/heathrow-airport-third-runway-ruling-scli-intl/index.html> (최종방문일 2024. 05. 14.) ; Philip Georgiadis / Gill Plimmer, Will Heathrow’s third runway finally go ahead?, Financial Times, 2023. 09. 28., <https://www.ft.com/content/a8ca67d4-23e2-4a43-846b-12ea46c7c382> (최종방문일 2024. 05. 14.)

자증권이 2019년 1월 히드로공항에 대한 대출투자를 승인한 후 기관투자자에게 재판매 하였고,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은 2019년 4월 사모펀드를 설정하였기 때문에⁷⁴⁾ 투자에 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히드로공항에 투자한 금융기관이 자신의 투자로 인한 간접배출량을 산출할 의무가 있었다면 간접배출량의 수치에 따라 투자여부 판단이 달라졌을 수 있다.

4. 국내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기후공시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후공시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금융감독기관은 공시 기준 수립에 착수하였다. 본 절(節)에서는 위 내용을 차례로 살펴본다.

가. 법률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가) 개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는 상장법인 등의 계속공시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상장법인 등의 계속공시제도는 자본시장 규제의 양대 기둥 중 하나이다.⁷⁵⁾ 상장법인이거나, 한 번이라도 증권을 공모하였거나, 상장법인도 아니고 공모한 적도 없지만 기업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고 투자자 수가 많은 기업이라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존속하는 한 계속 공시를 해야 한다.⁷⁶⁾ 계속공시에는 사업보고서

74) 이상규, ‘한국투자증권-플랫폼파트너스, 런던 히드로공항 2300억 대출채권 투자’, 매일경제, 2019. 01. 31., <https://www.mk.co.kr/news/stock/8675316> (최종방문일 2024. 05. 14.) ; 김민수, 항공업 ‘취청’... 금융투자업계 英 히드로공항 투자 여파는?(종합), 대한경제, 2020. 04. 23.,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04221518056670719> (최종방문일 2024. 05. 14.)

75) 다른 기둥은 불공정거래 규제이다. 성희환, 자본시장법 강의, 서울파이낸스앤로그룹, 2022, 41,294면 참조.

76) 성희환, 자본시장법 강의, 서울파이낸스앤로그룹, 2022, 41-42면 참조.

(연간보고서), 분·반기보고서로 이루어지는 정기공시와 주요사항보고서라는 비정기공시가 있다.⁷⁷⁾ 거래소 상장법인이라면 이에 더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수시공시 의무도 진다.⁷⁸⁾

계속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각 사업연도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등 기업 현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⁷⁹⁾

나) 기후공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발의안

비록 2024. 05. 29. 국회 임기만으로 폐기되었지만, 자본시장법에 기후공시를 도입하고자 발의되었던 개정안을 두 가지 소개한다.

(1) 김성주의원 대표발의안⁸⁰⁾

김성주의원 대표발의안에는,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에 제5호부터 제7호를 개정·신설하여 기후공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해당 발의안에는 “재무제표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 관련 기회 또는 위험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대응계획(단기·중기·장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호), “온실가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소별 배출량과 총 온실가스 배출

77) 성희활, 자본시장법 강의, 서울파이낸스앤로그룹, 2022, 42면 참조.

78) 성희활, 자본시장법 강의, 서울파이낸스앤로그룹, 2022, 42면 참조.

79) 자본시장법 [법률 제19566호, 2023. 7. 18.] 제159조 제1항 및 제2항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 12. 14.), 의안번호 2125917

량 및 이에 대한 감축 목표”(제6호), “제5호·제6호에 따른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과 의사결정구조”(제7호)가 공시사항에 포함되는 것이 제안되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59조의2를 신설하여, “주권상장법인은 제159조제2항제5호·제6호에 따른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를 3년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 종속회사 중에서 주권비상장법인이 작성한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제2항 및 제3항의 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은 제159조제2항제5호·제6호에 따른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을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등의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2) 유의동의원 대표발의안⁸¹⁾

유의동의원 대표발의안에도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기후공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사업보고서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지출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기후공시제도에 따라 공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포함될 수 있다. 본 항(項)에서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라는 측면에서 기후공시제도와 일부 공통점이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상 조항을 간략히 살펴본다.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하여 ‘관리업체’⁸²⁾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작성하고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탄소중립기본법 제27조 제3항).⁸³⁾

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1. 12. 14.), 의안번호 2113887

8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참조.

83) 탄소중립기본법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제27조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관리업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관리업체 및 관리업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이하 이 조에서 “예비관리업체”라 한다)에 최근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리업체 및 예비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는 업체의 규모, 생산제품 및 생산량,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⁸⁴⁾ 또한 정부는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목표달성 여부 등을 공개할 수 있다.⁸⁵⁾⁸⁶⁾

또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녹색기업’⁸⁷⁾,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 그 밖에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다)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제출받은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업체에 대하여 명세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명세서를 바탕으로 등록부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여부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그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관리업체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정부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⑦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제6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세제·경영·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정보의 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지정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제3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및 명세서의 제출·수정·보완, 제4항에 따른 등록부의 관리, 정보 공개의 범위·방법, 비공개 요청의 방법, 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공개 여부의 결정,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4)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94호, 2024. 2. 6.] 제21조 제6항

제21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⑥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체의 규모, 생산공정도, 생산제품 및 생산량
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3.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사용연료의 성분, 에너지 사용시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시간
4.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시간,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종류
5. 그 밖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85) 탄소중립기본법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제27조 제4항 1문 참조(각주 83번).

86)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에 연도별·관리업체별 명세서 배출량 통계가 공개되어 있다. <https://ngms.gir.go.kr:8443/subMain.do?link=/hom/bbs/OGCMBBS023V.xml&menuNo=50900503> (최종방문일 2024. 03. 04.)

87) 환경기술산업법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16조의2 제1항 및 제4항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

은 환경정보를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8 제2항).⁸⁸⁾ ‘환경정보’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를 위한 목표 및 주요 활동 계획 등이 포함되며,⁸⁹⁾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에 공개된다.⁹⁰⁾ 또한 환경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9 제1항).⁹¹⁾⁹²⁾

그러나 탄소중립기본법과 환경기술산업법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와 관련된 위 조항은 기후공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정보인 ‘기후변화가 기업의 재무에 미칠 영향,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④ 녹색기업의 지정과 재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8) 환경기술산업법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16조의8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작성·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제외한다.

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89) 환경기술산업법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16조의8 제2항 참조(각주 88번).

90) 환경기술산업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51호, 2021. 10. 29.] 제33조의13 제1항

제33조의13(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려는 기관 및 기업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같은 조 제2항의 환경정보를 제33조의15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이하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91) 환경기술산업법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16조의9

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8에 따라 공개된 환경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정보를 검증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증한 결과, 공개된 환경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92) 한편 기업의 환경성과와 환경친화적인 사업활동을 공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환경기술산업법은 온전한 의미로서 환경정보공개에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로, 구지선, 환경정보공개에 관한 공법적 검토 - 환경정보에 대한 상시적 접근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서울법학, 제21권 제3호, 2014, 44면 참조.

목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관리업 체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목표달성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현행 환경기술산업법과 그 하위법령에 의하면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여부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의무 공개사항이 아니다.

나. 거래소 자율공시제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한국거래소 수시공시제도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⁹³⁾으로 정해져 있다. 수시공시는 주요경영사항 공시, 자율공시,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으로 나뉜다.⁹⁴⁾

자율공시제도는 상장법인이 자율적으로 의무공시사항인 주요경영사항 외의 경영상 정보 또는 장래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감안한 책임투자가 확대되는 경향에 맞추어 매년 100여 개 사(社)가 '환경 관련 기화·위기요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양성평등 등 사회이슈관련 개선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을 담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 중 20개 사(社)가 한국거래소에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있다.⁹⁵⁾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경우, 국내 법률 또는 한국거래소 등에서 그 내용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ESG 공시를 위한 국제기준 이니셔티브를 채택하여 이에 따라 공시하고 있다.⁹⁶⁾

다. 금융감독기관 기준: 수립 예정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기업의 ESG 등 비재무적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래소 자율공시 활성화와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⁹⁷⁾ 공시 활

93) '공시규정의 법적 성격은 상장계약에 따라 거래소가 정하고 상장법인이 이를 준수하는 약관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업무로 공시업무를 열거하고 거래소의 공시규정에 정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수시공시제도가 고도의 공공성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법적 성격이 변하지는 않는다.' 성희환, 자본시장법 강의, 서울파이낸스앤로그룹, 2022, 283면 참조.

94) 성희환, 자본시장법 강의, 서울파이낸스앤로그룹, 2022, 283면 참조.

95) 2019년 기준치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별첨2, 2021. 01. 14., 15면 참조.

96) 심원태, 국내 ESG 공시제도 현황, BFL(Business Finance Law), 제109호, 2021, 23면 참조.

9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별첨2, 2021. 01. 14., 16면 참조.

성화 및 단계적 의무화 계획 1단계는, 2025년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제시한 ‘ESG 정보 공개 가이드스’⁹⁸⁾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2단계는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며, 3단계는 2030년 이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⁹⁹⁾ 아직은 자율공시 활성화 단계에 있고,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12월 한국회계기준원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설립하고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¹⁰⁰⁾ 이후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2024. 04. 30.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한 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2024년 8월까지 받기로 하였다. 해당 공개초안에 따르면, 기업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내용은 기업의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로 나뉜다. 한편 의무적 공시사항이더라도 기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공시를 생략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과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공시하여야 한다.¹⁰¹⁾ 또한 기후 관련 위험 또는 기회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할 때 기업이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정성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98) 동 가이드스는 GRI, TCFD 등 주요 정보공개기준을 간략히 소개하고, 여러 기준 중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지표를 ‘권고 지표’로 제시하였다.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 2021, 29-30면 참조.

99)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별첨2, 2021. 01. 14., 16면 참조.

100) 금융위원회,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 2024. 04. 22., 2면 참조.

101) 한국회계기준원, (공개초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주요 FAQ, 공개초안 붙임자료, 2024. 04. 30., 18면 참조.

II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공시규칙에 관한 (현)법적 논의

이 장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규칙에 관한 (현)법적 쟁점을 소개하려 한다. 본격적으로 헌법적 쟁점을 살피기에 앞서 기후공시규칙의 도입 배경과,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제정 권한, 그리고 기후공시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규칙 도입 배경

미국 공시제도는, 증권과 관련된 법령에서 공시사항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면서도, 증권과 관련된 법령에 공시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항목이라 하더라도 중요성(materiality)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공시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¹⁰²⁾¹⁰³⁾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기준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고,¹⁰⁴⁾ 기후변화 관련 정보 역시 무엇이 중요한 정보인지 모호하다는 논란이 있었다.¹⁰⁵⁾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라고도 한다)는 2010년 기후변화 관련 공시 해석 가이드선스(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 2021년 기후변화 공시 관련 표본 서신(Sample Letter to Companies Regarding Climate Change Disclosures)을 통해 환경 규제 준수 비용, 기후 관련 소송, 탄소배출권 관련 사항 등을 중요한 환경정보로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전제로 한 안내였다.¹⁰⁶⁾ 증권법상 중요성의 원칙에 의존하는 기존의 자발적 공시제도로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기후변화 관련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¹⁰⁷⁾ 이에

102) 미국연방규정집 17 CFR §240.12b-20 - Additional information. “In addition to the information expressly required to be included in a statement or report, there shall be added such further material information, if any, as may be necessary to make the required statements, in the light of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y are made not misleading.”

103) 이경훈, 미국공시제도의 개요와 운용사례, 연구보고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8, 5면 참조.

104) 이경훈, 미국공시제도의 개요와 운용사례, 연구보고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8, 5면 참조.

105) 김수연/이태, 미국 SEC 기후공시 규칙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학연구, 제32권 제3호, 2022, 각주3 참조.

106) 김수연/이태, 미국 SEC 기후공시 규칙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학연구, 제32권 제3호, 2022, 각주3 참조.

107) Allison Herren Lee, Living in a Material World: Myths and Misconceptions about “Materiality”, 2021. 05. 24., <https://www.sec.gov/news/speech/lee-living-material-world-052421> (최종방문일 2024. 04. 24.)

증권거래위원회는 2022년 3월 기후공시규칙(‘The 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혹은 ‘the Climate Disclosure Rule’, 이하 ‘기후공시규칙’이라 한다) 초안을 발표하였다.¹⁰⁸⁾ 이후 전 세계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2024년 3월 기후공시규칙 최종안을 발표하였다.¹⁰⁹⁾

2.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법적 지위와 규칙제정권

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이하 ‘미국 「증권거래소법(1934)」’이라고 한다)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인 연방 행정위원회이며,¹¹⁰⁾¹¹¹⁾ 증권규제와 관련된 사실상의 입법·사법·행정 기능이 집중된 기구이다.¹¹²⁾ 그 임무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하며 질서 있고 효율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자본형성을 촉진하는 것이다.¹¹³⁾¹¹⁴⁾ 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 「증권거래소법(1934)」과 Securities Act of 1933¹¹⁵⁾(이하 ‘미국 「증권법(1933)」’이라고 한다)의 위임에 따라 규칙(rules)과 규정(regulations)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¹¹⁶⁾ 증권거래위원회는 대통령이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¹¹⁷⁾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과 규정¹¹⁸⁾은 미국 「증권법(1933)」과 미국 「증권거래소법(1934)」에

108) U.S. SEC, SEC Adopts Rules to Enhance and Standardize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Press Release, 2024. 03. 06.,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4-31> (최종방문일 2024. 04. 18.)

109) U.S. SEC, SEC Adopts Rules to Enhance and Standardize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Press Release, 2024. 03. 06.,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4-31> (최종방문일 2024. 04. 18.)

110) U.S. SEC, About the SEC, 수정일 2023. 04. 06., <https://www.sec.gov/strategic-plan/about> (최종방문일 2024. 06. 21.)

111) 임재연, 美國證券法, 박영사, 2009, 34-35면 참조.

112) 임재연, 美國證券法, 박영사, 2009, 34면 참조.

113) 15 U.S.C. §77b(b) (2023), 15 U.S.C. §78c(f) (2023).

114) U.S. SEC, About the SEC, 수정일 2016. 11. 22., <https://www.sec.gov/about> (최종방문일 2024. 06. 21.)

115) 미국의 1929년 주가폭락 이후 경제재건을 위한 뉴딜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제정된 자본시장규제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으로서, 유가증권의 최초분매 발행에 관하여 규제하는 법이다. 동법으로 인하여 투자자는 유가증권에 관한 공정한 정보를 얻게 되었으며, 공정한 증권가격의 형성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쳤다. 세계법제정보센터,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요약본, 법제처, 2024. 05. 16., 1면,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CTS_SEQ=34727&AST_SEQ=313 (최종방문일 2024. 06. 22.)

116) 임재연, 美國證券法, 박영사, 2009, 36면 참조.

117) 또한 위원회가 당파성에 좌우되지 않기 위하여 같은 정당에 소속된 위원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U.S. SEC, SEC Commissioners, 2020. 12. 29., <https://www.sec.gov/about/sec-commissioners> (최종방문일 2024. 06. 28.)

118) 미국 「증권법(1933)」과 미국 「증권거래소법(1934)」에 관한 규정(regulation)은 모두 관련 규칙(rule)의

따라 별도로 제정되어 오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 통합공시제도(integrated disclosure system)에 의하여 두 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제정되었다.¹¹⁹⁾ 두 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에는, 재무정보의 공시에 관한 Regulation S-X,¹²⁰⁾ 비재무정보의 공시에 관한 Regulation S-K¹²¹⁾가 포함된다.

기후공시규칙은 증권거래위원회가 Regulation S-X와 Regulation S-K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적·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게 하는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제정되었다.

3. 최종 기후공시규칙의 주요 내용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규칙의 수범(受範) 기업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는, 크게 비재무정보와 재무제표상 정보로 나뉜다.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규칙의 비재무정보 공시 기준은, TCFD 권고안과 온실가스 프로토콜(Greenhouse Gas Protocol 혹은 GHG Protocol) 기업 표준을 기초로 수립되었다.¹²²⁾ 최종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²³⁾

가. 비재무정보

지배구조	전략 등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기후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 역할의 성격과 범위, 위험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에 대한 설명	기업의 전략, 비즈니스 모델, 전망에 실제적이고 잠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거나, 향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관련 위험	중요한 기후 위험 관리 절차와 해당 절차가 기업 전체 위험 관리 절차에 통합되는 방법, 위험 관리 전략의 일부로서 전환 계획 공개	기업의 비즈니스 및 재무 상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 관련 지표 및 목표

집합형태로 되어 있다. 임재연, 美國證券法, 박영사, 2009, 37-38면 참조.

119) 임재연, 美國證券法, 박영사, 2009, 38-39면 참조.

120) 임재연, 美國證券法, 박영사, 2009, 39면 참조.

121) 김수연/이태, 미국 SEC 기후공시 규칙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학연구, 제32권 제3호, 2022, 107면 참조.

122) 김수연/이태, 미국 SEC 기후공시 규칙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학연구, 제32권 제3호, 2022, 107-108면 참조.

123) 아래 표 내용은 삼일PwC ESG Platform, 미국 SEC 기후 공시 규칙 최종안, 이슈브리프, 삼일회계법인, 2024, 4-6면 참조.

지배구조	전략 등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기후 관련 위험을 완화하거나 적응하기 위한 활동 (지표와 목표를 포함한 전환계획, 시나리오 분석, 내부탄소세 등)		상장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Scope 1, 2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요한 경우 공시하며, 특정 온실가스 요소가 개별적으로 중요하다면 그 요소의 배출량에 대한 세분화된 공시도 필요
			탄소상쇄 ¹²⁴⁾ 및 재생에너지크레딧(RECs) ¹²⁵⁾ 활용 여부
			지표 및 목표 이행 경과

나. 재무제표 정보

기상이변 기타 자연현상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탄소상쇄 및 재생에너지크레딧(RECs) 정보	재무적 가정 및 추정
심각한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화된 원가, 비용 지출, 수수료 및 손실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하며, 해당 비용과 관련된 모든 회수액도 공개 필요	탄소 상쇄 및 재생에너지크레딧(RECs) 활용이 기업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 탄소상쇄 및 재생에너지크레딧으로 발생한 자본화된 원가, 비용, 손실에 대한 정보 공개 필요	기후 관련 사건(가뭄, 홍수 등)과 전환활동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에 사용된 추정 및 가정에 영향을 끼친다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
재무상태표 상 자본화된 원가와 수수료는 회계연도 말 현재 집계된 영향의 절대값이 자본총계의 1% 이상이며 50만 달러 이상인 경우 공시		

124) 기업이나 개인이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한 활동과 독립적인 다른 활동(예: 조림사업)을 통하여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125) 재생에너지크레딧(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라는 뜻으로, 재생에너지원(태양광·풍력 등)을 통하여 생산된 전력임을 증명하는 인증서이다.

기상이변 기타 자연현상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탄소상쇄 및 재생에너지크레딧(RECs) 정보	재무적 가정 및 추정
손익계산서 상 비용 지출과 손실 은 집계된 영향이 회계연도의 세 전 손익 절대값의 1% 이상이며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공시		

다. 초안과의 차이

최종 기후공시규칙은 그 초안에 비하여 여러 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었다.¹²⁶⁾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화제는 Scope 3 배출량 공시 의무화 여부였다.¹²⁷⁾ 기후공시규칙 초안에 따르면, Scope 3 배출량이 중요한(material) 정보일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Scope 3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었다.¹²⁸⁾ 그러나 증권거래위원회는 기후공시규칙 초안 발표 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Scope 3 배출량을 의무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¹²⁹⁾ Scope 3 배출량이 공시 대상에서 배제된 것 외에도, ‘중요성 조건(materiality qualifier)’이 여러 항목에 추가된 것도 큰 화두이다. 기업이 중요(material)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만 공시를 의무화하는 항목이 많아졌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안보다 완화된 공시 기준이 최종 발표되었지만, 미국 내에서 논란은 계속되는 형국이다.¹³⁰⁾

126) 초안에 비하여 변경된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삼일PwC ESG Platform, 미국 SEC 기후 공시 규칙 최종안, 이슈브리프, 삼일회계법인, 2024, 4-6면 참조.

127) 법무법인(유) 화우 ESG 센터, SEC,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확정 - Scope 3 의무 제외하고, 증대성 기준 확대를 통해 전반적 완화 -, Legal Update, 2024, 1면 참조.

128) Brian Croce, SEC finalizes climate disclosure rules without Scope 3 requirement, Pensions&Investments, 2024. 03. 06., <https://www.pionline.com/esg/sec-finalizes-climate-disclosure-rules-without-scope-3-requirement> (최종방문일 2024. 04. 18.)

129) Gary Gensler, Statement on Final Rules Regarding Mandatory Climate Risk Disclosures, Statement, 2024. 03. 06., <https://www.sec.gov/news/statement/gensler-statement-mandatory-climate-risk-disclosures-030624> (최종방문일 2024. 04. 18.)

130) 법무법인(유) 화우 ESG 센터, SEC,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확정 - Scope 3 의무 제외하고, 증대성 기준 확대를 통해 전반적 완화 -, Legal Update, 2024, 3면 참조.

라. 위반시 제재

기업이 위 공시사항을 불성실하게 공시할 경우, 일반적인 공시 관련 불이익 규정이 적용된다.¹³¹⁾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허위 기재하거나, 오해를 유발하지 않는 데 필요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¹³²⁾ 또한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정지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¹³³⁾

4.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공시규칙 관련 (헌)법적 쟁점

가. 개관

기후공시규칙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기업이어서 기업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후공시규칙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헌법적 논의 역시 양 측면에서 모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본 절(節)에서는 미국에서 개진되고 있는 양쪽 논의를 살펴본다.¹³⁴⁾

기업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는 쪽에서는 주로 미국 수정헌법 제1조¹³⁵⁾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기후공시규칙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업적 표현을 강요하여(compelled commercial speech)¹³⁶⁾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기업 가치

131) 김수연/이태, 미국 SEC 기후공시 규칙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학연구, 제32권 제3호, 2022, 115면 참조.

132) 세계법제정보센터 번역본, Securities Act of 1933 (2004년 9월 개정) 제24조 참조.

133) 김수연/이태, 미국 SEC 기후공시 규칙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학연구, 제32권 제3호, 2022, 115-116면 참조.

134) 기후공시규칙 초안에 대하여 개진된 주장이더라도, 최종 발표된 기후공시규칙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이 가능하다면 별도 표기 없이 그 내용도 함께 소개한다.

135) 연방 의회는 국교를 수립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나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및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136) ‘commercial speech’가 ‘상업적 언론’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상업적 표

를 평가절하할 가능성이 있고 또 기업 운영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강제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된다.¹³⁷⁾

반면 기후공시규칙의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쪽에서는, 기후공시규칙이 불충분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후공시규칙의 도입목적에 비추어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어야 하는데, 최종 기후공시규칙의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여 도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규칙을 발표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증권거래위원회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문제된다.

나. 기업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표현은 비상업적 표현과 상업적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상업적 표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상업적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restriction)하는 방법과 상업적 표현을 하도록 강요(compulsion)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각 경우에 서로 다른 위헌성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공시규칙으로 인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업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려면, 기후공시규칙이 ‘상업적 표현을 강요’하고 있어야 하고, 이에 대응하는 심사기준을 적용한 결과 위헌이라는 판단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1) 상업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먼저, 미국 연방대법원은 어떠한 표현을 ‘상업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살펴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약사가 처방약 가격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정한 버지니아 주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되었던 1976년 버지니아 주 약품위원회 대 버지니아 시민소비자위원회 판결(Virginia State Board of Pharmacy et al. v. Virginia Citizens Consumer Council, Inc, et al. 425 US 748 (1976))에서 ‘상업 정보의 원활한 유통’이라는 공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적극 옹호하면서, 상업적 표현도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현’으로 번역한다.

137) 김수연/이태, 미국 SEC 기후공시 규칙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학연구, 제32권 제3호, 2022, 117면 참조.

고 실시하였다. 그러면서 상업적 표현이란 ‘상업적 거래를 제안하기만 하는 표현(speech which does no more than propose a commercial transaction)’이라고 보았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1983년 볼거 대 영스제약회사 판결(Bolger v. Youngs Drug Products Corp., 463 U.S. 60 (1983))에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즉 (1) 광고의 형태이며, (2) 특정 제품을 언급하고, (3) 발언자가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표현은 상업적이라고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¹³⁸⁾¹³⁹⁾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상업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상업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에서,¹⁴⁰⁾ 기업이 상업적 거래, 즉 증권 공모 등을 염두에 두고 증권 관련 공시 내용을 작성·제출하는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위 1976년 버지니아 주 약품위원회 대 버지니아 시민소비자위원회 판결에서 제시된 ‘상업적 거래를 제안하기만 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¹⁴¹⁾ 달리 말해 증권 거래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해당 견해에 따르

138)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상업적 표현이 비상업적 내용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업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연방대법원이 비상업적 표현과 구분되는 상업적 표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Jonathan H. Adler, *Compelled Commercial Speech and the Consumer Right to Know*, *Arizona Law Review*, vol. 58 no. 2, 2016, pp.429-431. ; Ronald J. Krotoszynski, Jr. et al., *First Amendment : Cases and Theory*, 2nd ed.,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3, p.367.

139) ‘연방대법원은 상업적 표현을 ‘상업적 거래를 제안하는 표현’, ‘단지 화자와 청자 사이의 경제적 이익에만 관련되는 표현’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며, ‘광고의 형태를 띠며, 광고에 상품이름이 들어가며,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요소가 있다면, 즉 오로지 표현행위자의 경제적 이익 추구나 상업적 거래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상업적 표현’이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상업적 표현’과 ‘광고’를 혼용하기도 한다.’고 소개하는 문헌으로, 이노홍, *상업적 광고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론 재검토*,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2016, 230면 참조.

140) 본 문단에서 소개한 문헌 외에도, 미국 「증권법(1933)」과 미국 「증권거래소법(1934)」에 따라 공시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상업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견해로, Lloyd L. Drury III., *Disclosure Is Speech: Imposing Meaningful First Amendment Constraints on SEC Regulatory Authority*, *South Carolina Law Review*, vol. 58 no. 4, 2007, p.771 참조. 이 외에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 공시는 상업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는 글로, Sean J. Griffith, *What's “Controversial” About ESG? A Theory of Compelled Commercial Speech Under the First Amendment*, *Nebraska Law Review*, vol. 101 no. 4, 2023 및 Samantha M. Mariani,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Matters: Can the SEC Mandate Disclosure? Should the SEC Mandate Disclosure?*, *Notre Dame Journal of Law, Ethics & Public Policy*, vol. 37 no. 1, 2023, pp.387-391 참조.

141) 해당 견해에 따르면 금융 분석가, 투자 자문가, 자산 관리자 등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 외 모든 이해관계자 역시 기업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공시와 관련하여 상업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Michael M. Choi / Michael Barsa, *Can We Talk Climate? The SEC Disclosure Rule and Compelled Commercial Speech*, *Environmental Law Reporter*, vol. 53 no. 12, 2023, pp.10949-10950.

면 1983년 볼거 대 영스제약회사 판결에서 제시된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1) 발행자가 투자자가 구매하려는 재화인 증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광고에 해당하며, (2) 공모된 증권이라는 특정 재화를 언급하며, (3) 발언자인 기업은 오로지 경제적 동기에 의하여 행동하므로¹⁴²⁾ 상업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다.

반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업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거래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후공시가 어떻게 ‘상업적 거래를 제안하기만’ 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본다.¹⁴³⁾ 나아가 기후공시가 단지 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와만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후공시는 환경에 대한 우려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이해관계와는 별개일 수 있기 때문이다.¹⁴⁴⁾ 이 외에도, 증권거래위원회 의무 공시사항은 경제적 동기 유무에 따라 표현이 상업적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견해¹⁴⁵⁾, 연방 증권 규제의 대상이 되는 표현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¹⁴⁶⁾, 기업이 ‘사실’을 공개하는 데 있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광범위한 보호를 받는다면 미국 증권규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견해¹⁴⁷⁾ 등이 존재한다.

142) 해당 견해에 따르면 기업은 증권의 가격이 시장에서 정확하게 책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Michael M. Choi / Michael Barsa, Can We Talk Climate? The SEC Disclosure Rule and Compelled Commercial Speech, *Environmental Law Reporter*, vol. 53 no. 12, 2023, p.10950.

143) 해당 견해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상업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상업적 표현’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Michael Zschokke, *Compelled Climate Speech*,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Online, 2023, p.19.

144) Michael Zschokke, *Compelled Climate Speech*,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Online, 2023, p.20.

145) 증권거래위원회의 의무 공시사항 중 기후공시규칙을 전제로 한 견해는 아니다. Nicholas Wolfson, *The First Amendment and the SEC*, *Connecticut Law Review*, vol. 20 no. 2, 1988, pp.279,287.

146) 기후공시규칙을 전제로 한 견해는 아니다. Frederick Schauer, *The Boundaries of the First Amendment: A Preliminary Exploration of Constitutional Salience*, *Harvard Law Review*, vol. 117 no. 6, 2004, p.1778.

147) 기후공시규칙을 전제로 한 견해는 아니다. Michael R. Siebecker, *Corporate Speech, Securities Regulation, and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the First Amendment*, *William and Mary Law Review*, vol. 48 no. 2, 2006, p.618.

2) 연방대법원이 강요된 상업적 표현에 적용하는 심사기준

가) 상업적 표현 제한에 적용하는 심사기준 개관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6년 ‘버지니아 주 약품위원회 대 버지니아 시민소비자위원회 판결(Virginia State Board of Pharmacy et al. v. Virginia Citizens Consumer Council, Inc, et al. 425 US 748 (1976))’에서 처음으로 상업적 표현을 보호하였다.¹⁴⁸⁾ 하지만 헌법적 보호의 정도라는 측면에서 상업적 표현은 결코 정치적 표현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으며, 따라서 진실하고 합리적인 정보의 유통을 위해 얼마든지 상업적 표현을 규제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이 개진되었다.¹⁴⁹⁾ 상업적 표현에 대한 제한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지를 심사할 때는 정치적 표현에 대한 제한일 경우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상업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표현의 금지’와 ‘공개의 강요’가 있을 수 있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각 경우에 다른 위헌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⁵⁰⁾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상업적 표현에 해당한다면, 기후공시규칙은 상업적 표현을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형태에 해당한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자우더러(Zauderer) 조건과, 그 해석이 문제되었던 최근 판례를 살펴본다.

나) 강요된 상업적 표현에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자우더러 조건과 최근 연방대법원 판례

(1) 자우더러 대 오하이오 주대법원 징계위원회실 판결에 제시된 조건과 심사기준

148) 강승식, 미국 헌법학 강의, 궁리출판, 2007, 532면 참조.

149) 강승식, 미국 헌법학 강의, 궁리출판, 2007, 532면 참조.

150)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전자에는 센트럴허드슨(Central Hudson) 판결의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센트럴허드슨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뉴욕시공공서비스위원회(PSC)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에너지 소비를 조장하는 일체의 광고를 금지하였으나, Central Hudson 가스·전기회사는 전기사용을 촉진하는 광고를 하였다. 그러자 뉴욕시 당국은 이 광고를 금지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Central Hudson 가스·전기회사는 일체의 에너지 소비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업적 표현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기 위한 4단계 심사기준으로 (1) 상업적 표현이 합법적인 활동에 관한 것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2) 상업적 표현 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주장된 정부의 이익이 실질적이어야 하며,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3) 그러한 규제가 정부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증진하여야 하고 (4) 그러한 규제가 정부의 이익을 달성함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는 센트럴허드슨 심사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뉴욕시 당국의 광고 금지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Central Hudson Gas & Elec. v. Public Svc. Comm'n, 447 U.S. 557 (1980).

미국 연방대법원은, 변호사의 수입료 비율이 비용·경비 공제 전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후에 적용되는 것인지가 공개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문제되었던 ‘자우더러 대 오하이오주 대법원 징계위원회실(Zauderer v. Office of Disciplinary Counsel of Supreme Court of Ohio, 471 U.S. 626 (1985))’(이하 ‘자우더러 판결’이라고 한다) 사건에서, 상업적 표현을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규제에 완화된 위헌 심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즉, 공개가 강요되는 내용이 ‘오직 사실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정보(purely factual and uncontroversial information)’이어야¹⁵¹⁾ 완화된 심사기준¹⁵²⁾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하 ‘자우더러 조건’이라 한다).

위 판결에 따르면 자우더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표현을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규제가 ‘소비자 기만을 방지하려는 공익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reasonably related to the State's interest in preventing deception of consumers)’ 표현자의 권리는 적절히 보호된 것이라고 한다(이하 ‘자우더러 판결의 완화된 심사’라 한다).¹⁵³⁾ 달리 말해, 상업적 표현을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에도 정당하지 않거나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공개 의무는 표현을 위축시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지만, 소비자 기만을 방지하려는 공익과 합리적 연관성이 있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자우더러 판결 이후, ‘오직 사실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정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연방항소법원이 상이한 해석을 하고 있다.¹⁵⁴⁾ 연방대법원에서 제시한 기준이 모호하여,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의 의도를 추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워싱턴

151) 연방대법원이 ‘자우더러 대 오하이오주 대법원 징계위원회실’ 판결에서 제시한 자우더러 조건에는, ‘오직 사실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정보’이어야 한다는 것에 더하여, 표현의 공개를 강요하는 목적이 ‘소비자의 혼란 또는 기만을 방지하기 위함’이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견해나 하급심 판결도 존재한다. ‘소비자 혼란 또는 기만을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인 경우에만 자우더러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완화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아직 명확하게 실시한 바 없다. Michael M. Choi / Michael Barsa, Can We Talk Climate? The SEC Disclosure Rule and Compelled Commercial Speech, *Environmental Law Reporter*, vol. 53 no. 12, 2023, p.10946 ; Sean J. Griffith, What's “Controversial” About ESG? A Theory of Compelled Commercial Speech Under the First Amendment, *Nebraska Law Review*, vol. 101 no. 4, 2023, p.900.

152) 이는 센트럴허드슨 판결의 심사기준보다 더 완화된 심사기준에 해당한다. Milavetz, Gallop & Milavetz, P. A. v. United States, 559 U.S. 229 (2010) 참조.

153) Zauderer v. Office of Disciplinary Counsel of Supreme Court of Ohio, 471 U.S. 626 (1985)

154) Ellen P. Goodman, Visual Gut Punch: Persuasion, Emotion, and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Graphic Disclosure, *Cornell Law Review*, vol. 99 no. 3, 2014, pp.535-536 ; Michael M. Choi / Michael Barsa, Can We Talk Climate? The SEC Disclosure Rule and Compelled Commercial Speech, *Environmental Law Reporter*, vol. 53 no. 12, 2023, p. 10945.

D.C. 연방항소법원은 ‘사실적이고 이념과 무관’하면 자우더러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으나, 제6구역 연방항소법원은 ‘과학계에서 다툼이 있다면’ 논란이 있는 (controversial) 것으로 보기도 하였고, 제2구역 연방항소법원은 ‘대중적인 토론 주제인지와 논란이 있는 정치적 주제인지’를 고려하여 논란의 유무를 판단하였다.¹⁵⁵⁾ 이후 연방 대법원은 2018년 *전국가족생명옹호자협회 대 베세라 판결*¹⁵⁶⁾(National Institute of Family and Life Advocates v. Becerra, 585 U.S. __ (2018))(이하 ‘가족생명옹호자협회 판결’이라 한다)에서, ‘오직 사실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정보’라는 기준에 대하여 판단한 바 있다.

(2) 가족생명옹호자협회 판결에 제시된 자우더러 조건의 해석

(가) 가족생명옹호자협회 판결의 배경과 개요¹⁵⁷⁾

‘캘리포니아 임신·출산의 자유, 책임, 포괄적 관리 및 투명성에 관한 법률’(The California Reproductive Freedom, Accountability, Comprehensive Care, and Transparency Act, 이하 ‘FACT 법’이라 한다)은 임신한 여성을 위한 진료소로 하여금 특정 고지를 하도록 하였다. 첫째, 의료면허가 있는 진료소는 여성에게 ‘캘리포니아주가 낙태를 포함한 무료 또는 저가의 시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알리고 전화번호를 주어야 한다(이하 ‘면허상 고지’라 한다). 둘째, 의료면허가 없는 진료소는 여성에게 ‘캘리포니아주가 해당 진료소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이하 ‘무면허 고지’라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러한 고지의무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위기임신센터(crisis pregnancy centers)¹⁵⁸⁾를 규율하기 위해

155) Michael M. Choi / Michael Barsa, Can We Talk Climate? The SEC Disclosure Rule and Compelled Commercial Speech, *Environmental Law Reporter*, vol. 53 no. 12, 2023, p. 10946.

156) National Institute of Family and Life Advocates v. Becerra, 585 U.S. __ (2018).

157) 해당 내용은 헌법재판연구원, 낙태를 반대하는 진료소에게 낙태 시술을 안내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세계헌법재판동향* 2019 제3호, *세계헌법재판동향* 2019-E-3, 2019, 19-21면 참조

158) Melissa N Montoya / Colleen Judge-Golden / Jonas J Swartz, The Problems with Crisis Pregnancy Centers: Reviewing the Literature and Identifying New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Women’s Health*, vol. 14, 2022, p.757에 따르면, ‘위기임신센터는 진료소를 표방하면서 낙태를 제한하고 막기 위한 목적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로, 성 건강 및 낙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기만적인 행위를 한다. 또한 위기임신센터는 의학적으로 허용된 산전 및 낙태 치료에 대한 접근을 지연시켜 산모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실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기임신센터는 허가된 진료소가 아닐 수

FACT 법을 제정하였다. 위기임신센터는 대체로 기독교 신앙에 근간한 반낙태(pro-life) 단체로 방문자에게 제한된 범위의 임신선택지(pregnancy options)와 상담,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법의 입안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는 거의 200개의 위기임신센터가 있다. 이 센터들은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지 않도록 말리거나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FACT 법에 두 가지 고지의무가 포함되었던 것이다.

첫 번째 고지의무는 의료면허가 있는 시설에 적용된다. 이 경우, FACT 법에 따라 그 진료소 현장에서 “캘리포니아주는 무료 또는 저가로 포괄적인 가족계획서비스(미국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모든 피임법들을 포함), 산전관리, 낙태 시술을 즉각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공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 여부를 알고자 한다면 카운티 사회복지과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힌 고지문을 게시하거나 배포하여야 한다. FACT 법의 목적은 캘리포니아 주민이 자신의 권리와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아는 상태에서 임신·출산에 관한 의료적 결정을 내리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주의회는 수많은 여성이 피임, 보건교육과 상담, 가족계획, 산전관리, 낙태, 분만을 제공하는 공공 프로그램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주의회는 임신과 관련된 결정이 분초를 다투는 성질을 갖는다는 점을 들어, 고지를 통하여 환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결론지었다.

두 번째 고지의무는 의료면허가 없는 시설에 적용된다. 여기서 의료면허가 없는 시설이란 캘리포니아주로부터 의료시설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의사면허가 있는 의료진이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있지 않은 임신 관련 서비스 제공 시설을 뜻한다. 의료면허가 없는 시설은 “이 시설은 캘리포니아주가 의료시설로 허가하지 않았으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직접 감독할 의사면허가 있는 의료진이 없습니다.”라는 고지를 현장과 모든 광고물에 적어야 한다. 그러한 고지는 출입문과 적어도 한 개의 대기실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하며, 적어도 8.5인치×11인치 크기에 글자크기는 48포인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광고물은 주변 문구 이상의 크기이거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식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위 규정의 목적은 캘리포니아 임신부가 자신이 면허가 있는 전문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는지

있으며, 낙태의 합법성 또는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다.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Attorney General Bonta Issues Consumer Alert Warning Californians That Crisis Pregnancy Centers Do Not Offer Abortion or Comprehensive Reproductive Care, Press Release, 2022. 06. 01., <https://oag.ca.gov/news/press-releases/attorney-general-bonta-issues-consumer-alert-warning-californians-crisis> (최종방문일 2024. 08. 28.)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사건 상고인들은 낙태에 반대하는 두 개의 위기임신센터(하나는 의료면허가 있는 센터, 하나는 없는 센터)와 위기임신센터 단체인 전국가족생명옹호자협회(National Institute of Family and Life Advocates)이다.¹⁵⁹⁾ 상고인들은 이러한 고지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킨다고 주장하면서 고지의무를 규정한 법률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치분신청을 하였다. 지방법원은 그들의 가치분신청을 기각하였고, 항소심도 상고인들이 본안승소가능성(likelihood of success on the merits)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의료면허가 있는 시설에 부과된 고지의무는 ‘전문적 표현(professional speech)’을 규율하는 ‘더 낮은 단계의 심사기준(lower level of scrutiny)’을 통과하며, 의료면허가 없는 시설에 부과된 고지의무는 어떠한 단계의 심사기준도 통과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¹⁶⁰⁾은 FACT 법이 부과하는 두 가지 고지 의무가 모두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가족생명옹호자협회 판결에 제시된 반대의견

가족생명옹호자협회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의 법정의견은 ‘낙태’는 결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주제가 아니며, 따라서 자우더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완화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오랫동안 입법부가 자유롭게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온 사회·경제적 법률을 폐지하는 데 수정헌법 제1조를 사용하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진정한 의미를 되려 모호하게 만들 것이다. ... ‘낙태’는 논쟁적인 주제이지만 ‘주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은 그렇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 강제된 면허상 고지는 임신한 여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신의 지속과 중단 중 하나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는 대법관 4인¹⁶¹⁾의 반대의견이 개진되었다.¹⁶²⁾ ‘낙태 시술을 즉각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오직 사실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정보’라고 볼 수 있음에도, 연방대법원 법정의견은 공개하도록 강제된 내용의 기저에 있는 주제인 ‘낙태’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¹⁶³⁾

159) 피상고인인 베세라(Becerra)는 당시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이었다.

160)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John Roberts), 연방대법원 대법관 앤서니 케네디(Anthony Kennedy), 클라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 새뮤얼 앨리토(Samuel A. Alito, Jr.), 닐 고서치(Neil Gorsuch) 5인의 법정의견이다.

161) 연방대법원 대법관 스티븐 브레이어(Stephen Breyer),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엘리나 케이건(Elena Kagan)이다.

162) National Institute of Family and Life Advocates v. Becerra, 585 U.S. ___ (2018).

163) 연방대법원의 가족생명옹호자협회 판결로 인해 자우더러 조건을 해석하는 데 혼란이 가중되었다고 평

(3) 기후공시규칙의 경우

기후공시규칙이 상업적 표현을 강요하는 규제에 해당한다면 수정헌법 제1조에 반하는 강요된 상업적 표현인지가 문제될 것이다. 그렇다면 기후공시규칙에 의하여 공시가 강제되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가 ‘오직 사실에 관한 것이며 논란의 여지가 없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실무·학계에는 기후공시규칙이 자우더러 조건을 충족하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자우더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 제삼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모두 존재한다.

자우더러 조건을 충족하므로 자우더러 판결의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기후공시규칙의 도입에 반대하는 자들이 논란을 일으키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하여 기후공시규칙을 통해 공시되는 내용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보는 아니며, 의회가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한 점¹⁶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¹⁶⁵⁾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당위적 논쟁과 지속가능성 공시는 구분되는 별개의 주제이고, 기후공시규칙에 따라 기업이 ‘당위적 내용’이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실’을 공개하도록 강요되는 것이 아니며, 운영 과정에서 환경에 유해한 기체(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고 있는지는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라고 지적하는 견해¹⁶⁶⁾도 있다. 이 외에도 공시하도록 요구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에 관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으나, 보완책을 통하여 기후공시규칙에 의하여 공개되는 정보가 ‘사실에 관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정보로 한정될 수 있다는 견해¹⁶⁷⁾도 있다. 해당 견해에 따

가하는 문헌으로, Michael M. Choi / Michael Barsa, Can We Talk Climate? The SEC Disclosure Rule and Compelled Commercial Speech, *Environmental Law Reporter*, vol. 53 no. 12, 2023, p.10947 ; Sean J. Griffith, What's "Controversial" About ESG? A Theory of Compelled Commercial Speech Under the First Amendment, *Nebraska Law Review*, vol. 101 no. 4, 2023, pp.900-901 등 참조.

164)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v.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606 F.2d 1031, 1045 (1979).

165) George S. Georgiev, The SEC's Climate Disclosure Rule: Critiquing the Critics, *Rutgers Law Record*, 50, 2022, pp.117,129.

166) Michael M. Choi / Michael Barsa, Can We Talk Climate? The SEC Disclosure Rule and Compelled Commercial Speech, *Environmental Law Reporter*, vol. 53 no. 12, 2023, pp.10950-10951.

167) 해당 견해는 기본적으로 다른 증권 규제와 마찬가지로, 기후공시규칙에는 수정헌법 제1조가 문제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나, 설령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영역에 속하여 위헌심사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우더러 판결의 완화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Natural Resources Defense*

르면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 등 대부분의 공시사항은 ‘오직 사실에 관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부 공시사항, 예를 들어 미래 시나리오 분석은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적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어서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공시사항에 한하여 ‘공시의무를 불이행하기로 선택할 경우 설명(comply or explain framework)’하도록 기후공시규칙을 설계하여 논쟁을 피해갈 수 있다고 평가한다.¹⁶⁸⁾

반면 기후공시규칙이 자우더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우더러 판결의 완화된 심사보다 엄격한 위헌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기후공시규칙이 투자자를 희생시키며 이해관계 집단(interest group)의 의제를 추진함으로써 특정한 정치적 관점을 강요하므로 논란을 야기한다¹⁶⁹⁾고 보아, 자우더러 판결의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¹⁷⁰⁾ 기후공시규칙 도입에 반대하였던 한 증권거래위원회 위원 역시 비슷한 논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¹⁷¹⁾

제삼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강요된 상업적 표현’인지를 유형·형식적으로 접근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헌법적 가치를 위해 특정 표현을 보호하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한 후에 이를 반영하여 적절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¹⁷²⁾

Council et al., Public Comment on Proposed Climate Disclosure Rule, 2021. 06. 11., pp.27-29. <https://www.sec.gov/comments/climate-disclosure/cll12.htm> (최종방문일 2024. 06. 29.)

168)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et al., Public Comment on Proposed Climate Disclosure Rule, 2021. 06. 11., p.29. <https://www.sec.gov/comments/climate-disclosure/cll12.htm> (최종방문일 2024. 06. 29.)

169) 이 글의 저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규제와 (명목적으로 내세운) 목적을 살펴본 후 해당 규제가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명목적으로 내세운) 목적과 해당 규제가 부합한다면 숨은 의도가 없는 것이고, 논란의 여지도 없다. 반대로 (명목적으로 내세운) 목적을 초과하는 규제라고 볼 수 있다면, 숨은 의도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Sean J. Griffith, What’s “Controversial” About ESG? A Theory of Compelled Commercial Speech Under the First Amendment, Nebraska Law Review, vol. 101 no. 4, 2023, p.916.

170) Sean J. Griffith, What’s “Controversial” About ESG? A Theory of Compelled Commercial Speech Under the First Amendment, Nebraska Law Review, vol. 101 no. 4, 2023, p.944.

171) Hester M. Peirce, We are Not the Securities and Environment Commission - At Least Not Yet, Statement, 2022. 03. 21., <https://www.sec.gov/news/statement/peirce-climate-disclosure-20220321> (최종방문일 2024. 04. 19.)

172) 해당 견해에 따르면 ‘기업은 개인의 결사를 대표하는 인위적 조직이므로, 기업은 기업 배후의 ‘자연인’의 헌법적 권리에서 파생된 권리(derivative rights)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기후공시에 있어서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누리는 (헌법상) 이익은 없고, 그 배후의 자연인인 투자자의 알 권리만 인정될 뿐이다.’ Michael Zschokke, Compelled Climate Speech,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Online, 2023, pp.23-27.

3) 소결

기후공시규칙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미국 내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기후공시규칙은 상업적 표현을 강요하며, 이럴 경우 자우더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위헌성 판단 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기후공시규칙은 자우더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낸다. 반면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논리 전개는 각 단계에서 반대되는 견해를 제시한다. 즉, 기후공시규칙은 ‘상업적 표현’의 보호영역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견해, 상업적 표현에 해당하나 자우더러 조건을 충족하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는 견해, ‘상업적 표현’인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제삼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다. 기후공시규칙이 부재하거나 불충분하여 위법하다는 의견

반면 기후공시제도가 불충분하여 위법하다는 주장도 개선되었다. 일부 환경단체는 1970년대에 기업이 환경 관련 방침을 포괄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024년에는 최종 기후공시규칙이 그 초안에 비하여 지나치게 완화되어 위법하다는 관점에서 소송이 제기되었다.

1) 1970년대 진행되었던 소송의 개요

천연자원보호협회(NRDC,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¹⁷³⁾ 등은 1971년 증권거래위원회에 고용 관행과 환경에 대한 공시규정을 확대하여 수립할 것을 청원하였다. 그러나 증권거래위원회는 천연자원보호협회 등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연자원보호협회 등은 이에 이의하여 D.C. 연방지방법원(원심)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D.C. 연방지방법원(원심)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자의적(arbitrary and capricious)이라고 판단하여¹⁷⁴⁾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치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이후 D.C. 연방항소법원(항소심)은,

173) 천연자원보호협회는 법률가가 모여 1970년에 설립한,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환경단체이다. NRDC, About NRDC, <https://www.nrdc.org/about#how-we-work> (최종방문일 2024. 06. 29.)

174)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v.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432 F. Supp. 1190,

증권거래위원회의 사실과 관련된, 특히 정책적인 결정에 대하여는 법원이 제한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후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적법(sustainable)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¹⁷⁵⁾

2) 2024년 제기된 소송의 개요

2024년에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 중 하나인 시에라클럽(Sierra Club)¹⁷⁶⁾은 기후공시규칙을 수립한 것 그 자체는 긍정적이나, 최종 기후공시규칙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¹⁷⁷⁾ 그 중 본 연구보고서와 관련이 있는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가) 시에라클럽이 소송을 제기한 배경¹⁷⁸⁾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적 위험(risk)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기업의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 투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있는 기업은 오랜 기간 투자자에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숨기며 전환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숨겨왔다. 이제는 투자자가 정보에 입각하여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상장기업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혹은 있지 않은지)를 투자자가 알아야 한다.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공시규칙은 바로 이를 위하여 도입되었고, 기후공시규칙은 공시를 표준화하고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1194-95 (D.D.C. 1977)

175)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v.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606 F.2d 1031 (1979)

176) 시에라클럽은 1892년에 설립되었으며, 미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풀뿌리 환경단체이다. Sierra Club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ierraclub.org/> (최종방문일 2024. 06. 29.)

177) 천연자원보호협회도 최종 기후공시규칙의 불충분성을 다루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천연자원보호협회와 시에라클럽은 2024. 05. 31. 최종 기후공시규칙의 불충분성을 다루기 위해 제기하였던 소송을 취하하였다. 법정 밖에서, 소송 외의 방법으로 기후변화 관련 공시 강화 활동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여러 주(州)의 법무장관이 기후공시규칙을 지지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Nicole Banas, Sierra Club, NRDC won't contest SEC climate disclosure rule, WESTLAW Securities Enforcement & Litigation Daily Briefing, 2024. 06. 04., [https://www.westlaw.com/Document/Ia975afca22b211ef8921fbef1a541940/View/FullText.html?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VR=3.0&RS=cblt1.0](https://www.westlaw.com/Document/Ia975afca22b211ef8921fbef1a541940/View/FullText.html?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VR=3.0&RS=cblt1.0) (최종방문일 2024. 06. 29.)

178) 해당 내용은 Jessye Waxman, The Progress and Shortcomings of the SEC's Climate Risk Disclosure Rule, Sierra Club, 2024. 04. 12., <https://www.sierraclub.org/articles/2024/04/progress-and-shortcomings-sec-s-climate-risk-disclosure-rule> (최종방문일 2024. 06. 24.) 참조.

것이다. 그러나 2022년 제시되었던 초안에 비하여 최종 기후공시규칙에서 여러 가지 중요하고도 법적으로 필요한 조항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제외되었다. 이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하며 질서 있고 효율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자본형성을 촉진하여야 할 증권거래위원회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¹⁷⁹⁾이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나) 시에라클럽의 주장¹⁸⁰⁾¹⁸¹⁾

(1)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역행

가장 논란이 많이 되었던 공시 기준 중 하나는 Scope 3 배출량 공시이다.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산에서 기인하는 Scope 1 직접배출량 또는 기업이 영업을 위하여 구매한 에너지에서 기인하는 Scope 2 간접배출량과 달리, Scope 3 배출량은 기업의 통제권 밖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한 간접배출량 중 Scope 2 배출량을 제외한 것이다. 여기에는 식품 기업의 삼림 벌채 관련 배출량, 자동차 기업의 배기관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과 사업에 자본을 제공하는 대형 은행의 금융제공과 관련된 배출량 등 광범위한 활동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상장 기업의 배출량 중 상당량은 Scope 3에 속한다. 특히 기후공시규칙에 강력히 반대하는 석유·가스 기업 등은 Scope 3 배출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후공시규칙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투자자의 97%가 중요하거나(material) 기업이 정한 목표가 있는 경우에는 Scope 3 배출량을 공개해야 한다고 보았다.¹⁸²⁾ 그러나 최종 기후공시규칙에 따르면 Scope 3 간접배출량을 공개할 의

179) Sierra Club, 'Sierra Club, Earthjustice Lawsuit Challenges SEC's Weakened Climate Risk Disclosure Rule', Press Release, 2024. 03. 13., <https://www.sierraclub.org/press-releases/2024/03/sierra-club-earthjustice-lawsuit-challenges-sec-s-weakened-climate-risk> (최종방문일 2024. 06. 24.)

180) 해당 내용은 Jessye Waxman, The Progress and Shortcomings of the SEC's Climate Risk Disclosure Rule, Sierra Club, 2024. 04. 12., <https://www.sierraclub.org/articles/2024/04/progress-and-shortcomings-sec-s-climate-risk-disclosure-rule> (최종방문일 2024. 06. 24.) 참조.

181) 시에라클럽의 주장과 취지가 유사한 글로, Chloe Field / Cynthia Hanawalt, The SEC's Final Climate Disclosure Rule: Key Requirements, and the Materiality Threshold, Columbia Law School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 Blog, 2024. 03. 11., <https://blogs.law.columbia.edu/climatechange/2024/03/11/the-secs-final-climate-disclosure-rule-key-requirements-and-the-materiality-threshold/> (최종방문일 2024. 06. 25.) 참조.

182) Steven Rothstein, Analysis shows that investors strongly support the SEC's proposed climate disclosure rule, Insights, Ceres, 2022. 10. 11., <https://www.ceres.org/resources/news/analysis-shows-that-investors-strongly-support-the-secs-proposed-climate-disclosure-rule> (최종방문일 2024. 06. 24.)

무는 아예 없다. 공시 외의 다른 방법으로 얻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보인 Scope 3 간접배출량이 공시 기준에서 배제되어 투자자의 이익이 적절히 보호되지 않는다.

(2) '중요성(materiality)' 조건

최종 기후공시규칙에 Scope 1 직접배출량과 Scope 2 간접배출량은 공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중요성(materiality)'이라는 결정적인 조건이 추가되었다. 기업은 중요(material)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만 Scope 1·2 배출량을 공시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2022년 제시되었던 그 초안에 따르면, 중요성과 무관하게 모든 상장기업이 Scope 1·2 배출량을 공시해야 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중요성 조건이 Scope 1·2 배출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기준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문제이다. 하나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추가적인 지침이나 감독이 없으면 공시의 범위를 전적으로 기업이 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초안과 달리, 표준화되어 비교 가능한 공시 기준이 될 가능성은 낮아지고, 결국 투자자는 공시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하기 어려워진다. 물론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전환이 경제의 모든 측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므로 현재보다 더 공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리라 예상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성 조건은 기업에게 불필요한 재량을 부여하여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투자자가 정작 '중요한' 모든 정보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최종 기후공시규칙에 따르면,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업은 해당 시나리오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러한 위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적절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후변화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다. 기업이 부적절한 모델이나 가정에 기반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잘못 판단한다면 (부적절한 시나리오를 사용하고 있다는)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라. 소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기후공시규칙을 최종 발표한 이후 제기된 주장은 기후공시제

도의 헌법적 논쟁 지점을 드러낸다. 기후공시제도로 인해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으나, 투자자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을 적절히 마련하는 것이 공정하며 질서 있고 효율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자본형성을 촉진하여야 할 증권거래위원회의 의무에 해당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 하에서는 어떠한 논의가 가능할지 살펴본다.

IV. 국내 기후공시제도의 헌법적 쟁점

미국 수정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유형은 대한민국 헌법에 비하여 적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규칙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강요된 상업적 ‘표현의 자유’와 연관되어 전개되는 이유도 기본권 유형이 비교적 다양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본권 유형이 더 많고, 경제와 관련된 헌법 조항도 별도의 장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 하에서는 환경(정보접근)권과 직업의 자유, 경제헌법 해석 등이 문제될 것이다.

본 장 1절에서는 대한민국에 기후공시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 목적을 추정해본다. 이후 기후공시제도 도입 여부에 따라 관련된 기본권의 제한·침해 가능성을 살펴본다. 기후공시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한 상황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반면 기후공시제도가 도입된 상황을 상정한다면 기업의 기본권 제한과 그 정당성이 문제된다. 전자는 2절에서, 후자는 3절에서 각 헌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1. 기후공시제도의 목적

가. 서설

기후공시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행정(입법)권이 행사되거나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기후공시가 의무화될 수 있다. 그럴 경우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적·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할 의무를 지우는 목적은 ‘기후위기 타개를 위시한 환경보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시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50조 제2항¹⁸³⁾ 및 동법 제58조 제1항¹⁸⁴⁾에 따라 기후공시가 의

183) 탄소중립기본법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제50조(자산손실 위협의 최소화 등) ② 정부는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 등 경제주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자산손실 등의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184) 탄소중립기본법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자원 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

무화 될 수 있다. 동법의 목적이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 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동법 제1조)임을 고려하면, 동법에 근거한 기후공시제도의 목적 역시 ‘기후위기 타개’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중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적·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도 발의된 바 있다.¹⁸⁵⁾ 자본시장법의 목적이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동법 제1조)임을 고려할 때, 만약 자본시장법에 근거를 둔 기후공시제도가 생긴다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공정성 등’도 중요한 목적일 것이다.

정리하면, 기업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적·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게 하는 것은, 기업의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공개하여 ‘환경보전’이라는 헌법의 요청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라는 헌법적 과제¹⁸⁶⁾를 해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기후변화라는 경제적 위험 요인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경제 발전이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 모두 기후공시제도의 헌법적 목적에 해당하며, 둘 중 어느 하나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한편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은 구분되지만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 이를 잘 보여주는 개념이 ‘좌초자산’이다.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85) 국회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본 연구보고서 18-19면 참조.

186) ‘지속가능성은 헌법의 본질로부터,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1970년대 이후 인류가 처한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기능 및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고 또 존중되어야 할 요청으로 자리잡았다. 헌법은 국가의 존속과 지속가능성을 당연한 전제로 하며, 또 국가의 존속과 지속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헌법 전문의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는 선언은 이를 확인한다.’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23, 23면 참조.

나. 좌초자산

좌초자산(坐礁資産, stranded assets)이란, 기후변화 등 환경의 변화로 자산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의미한다.¹⁸⁷⁾ 달리 말해 자산이 좌초된다는 것은, 획기적인 정책 또는 기술 변화로 인해 자산의 수익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것이다.¹⁸⁸⁾

기후변화와 관련하여서 좌초자산이란,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면서 채굴되지 않거나 채굴되었지만 사용되지 않는 화석연료의 생산·발전 등 화석연료와 결합된 모든 산업의 자산을 의미한다.¹⁸⁹⁾ 지구 온도 상승을 1.5°C 이하로 억제하려면 전 세계가 현존하는 화석연료 매장량의 상당부분을 채굴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¹⁹⁰⁾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연소할 수 없게 되는 화석연료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부채로 남을 수 있는 발전소 및 파이프라인 등 화석연료와 관련된 인프라가 좌초자산이다.¹⁹¹⁾ 좌초자산의 우려는 화석연료 추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산업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화석연료가 생산 과정에 투입되거나, 탄소집약적인 산업에서도 좌초자산의 위험이 존재한다.¹⁹²⁾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술과 투자가 좌초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¹⁹³⁾

187) 한국경제, 좌초자산, 경제용어사전,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14807> (최종방문일 2024. 05. 13.)

188) Gregor Semieniuk et al., Stranded fossil-fuel assets translate to major losses for investors in advanced economies, *Nature Climate Change*, 12, 2022, p.532

189) 인소영/박기영, 기후변화의 경제학, *한국경제학보*, 제28권 제1호, 2021, 149면 참조.

190) Sini Matikainen (Eléonore Soubeyran 업데이트), What are stranded assets?,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Explainers, 2022. 07. 27., <https://www.lse.ac.uk/granthaminstitute/explainers/what-are-stranded-assets/> (최종방문일 2024. 05. 13.)

191) Sini Matikainen (Eléonore Soubeyran 업데이트), What are stranded assets?,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Explainers, 2022. 07. 27., <https://www.lse.ac.uk/granthaminstitute/explainers/what-are-stranded-assets/> (최종방문일 2024. 05. 13.)

192) Sini Matikainen (Eléonore Soubeyran 업데이트), What are stranded assets?,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Explainers, 2022. 07. 27., <https://www.lse.ac.uk/granthaminstitute/explainers/what-are-stranded-assets/> (최종방문일 2024. 05. 16.)

193) 기업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할 때 간접배출량도 포함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다시 한 번 더 드러난다.

화석연료와 결합된 자산의 가치 하락은,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에 반영되어 주식 시장 등 시장 가격에 반영된다.¹⁹⁴⁾ 가격이 조정되며, 자산의 최종 소유자가 재산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물론, 긴밀하게 연결된 금융망을 통해 다른 주체에게도 간접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¹⁹⁵⁾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많은 유전과 가스전이 다른 나라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자산이 좌초되면, 경제 선진국의 연기금과 금융 시장에 화석연료 자산의 좌초 위험이 노출되고, 이는 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라 한다) 회원국 투자자에게 큰 손실이 된다.¹⁹⁶⁾ 달리 말하면 OECD 회원국의 금융 투자자가 금융망을 통하여 석유와 가스 생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¹⁹⁷⁾ 그 결과 이러한 금융 투자자에게는, 제도적 타성을 받아들이거나, 심지어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늦추고 화석연료 사업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왜곡된 인센티브가 존재할 수 있다.¹⁹⁸⁾ 설령 좌초자산으로 인한 손실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금융 투자자는 국가로부터의 구제 금융을 기대할 수 있고, 이는 금융 투자자의 기대와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⁹⁹⁾²⁰⁰⁾²⁰¹⁾ 공적 자금이 구제 금융으로 쓰이게 되면 국가 전체 차원에서도 막대한 손실이다.

정리하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의 공시가 강화·확대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여 리스크를 인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좌초될 자산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차원에서 유익하기 때문이다.

194) Gregor Semieniuk et al., Stranded fossil-fuel assets translate to major losses for investors in advanced economies, *Nature Climate Change*, 12, 2022, p.532

195) Gregor Semieniuk et al., Stranded fossil-fuel assets translate to major losses for investors in advanced economies, *Nature Climate Change*, 12, 2022, p.532

196) Gregor Semieniuk et al., Stranded fossil-fuel assets translate to major losses for investors in advanced economies, *Nature Climate Change*, 12, 2022, pp.532, 537

197) Gregor Semieniuk et al., Stranded fossil-fuel assets translate to major losses for investors in advanced economies, *Nature Climate Change*, 12, 2022, p.537

198) Gregor Semieniuk et al., Stranded fossil-fuel assets translate to major losses for investors in advanced economies, *Nature Climate Change*, 12, 2022, p.537

199) 정부가 구제 금융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는 자산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200) Gregor Semieniuk et al., Stranded fossil-fuel assets translate to major losses for investors in advanced economies, *Nature Climate Change*, 12, 2022, p.537

201) 중앙은행이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최종 구조자(climate rescuer of last resort)’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Bolton et al.(2020)의 선행연구를 소개한 내용으로, 인소영/박기영, 기후변화의 경제학, 한국경제학보, 제28권 제1호, 2021, 177면 참조.

2. 기후공시제도 도입 전 - 국민의 환경정보접근권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가. 서설: 기후공시제도와 국민의 기본권

기후공시제도의 부재 또는 불충분성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환경권이나 알 권리가 있다.²⁰²⁾ 하지만 환경권이나 알 권리로는 기후공시제도로 인해 제한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먼저 환경권과 곧바로 연결 짓기 어려운 이유는, 기후공시는 기업의 경영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게 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의무를 지우는 제도가 아니라²⁰³⁾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생성하고) 공개’할 의무를 지우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권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알 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²⁰⁴⁾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권리를 의미하므로,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존의 법리에서 한 단계 나아가야 환경권이나 알 권리에 있는 간극을 해소하면서도 기후공시제도의 부재 또는 불충분성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세밀하게 포섭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항에서는 환경정보접근권이 환경권의 한 축을 이룬다고 보아야 할 필요성과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환경정보접근권을 환경문제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환경정보접근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미 공개된 정보로 한정되지 않는다. 즉 기업이 생성·보유·관리하는 환경정보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202) 투자자의 경우,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적·비재무적 정보가 공시되지 않거나 부족하여 투자자가 재산적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장래의 불확실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헌재 2019. 12. 27. 2017헌마1366등,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재산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투자자가 주주제안권을 통하여 기업을 상대로 기후공시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후공시 관련 주주제안 동향으로, 노종화/이승희, 주요 국가의 주주제안 현황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의 필요성, 경제개혁연구소, 연구보고서, 2023, 17면; 노종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주주제안 사례, 경제개혁연구소, 연구보고서, 2021 참조.

203) 기업이 친환경적으로 경영 방식을 바꾸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은 기후공시제도의 부수적·반사적 효과에 해당할 것이다.

204) 불특정다수인에게 정보를 공급해주도록 정해져 있는 정보원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신문, 방송, 전단, 공공도서관 등이 해당된다.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23, 460면 참조.

나. 환경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로서 환경정보접근권

환경권의 보호영역을 분류한다면, 절차적 권리와 실체적 권리로 대별할 수 있다.²⁰⁵⁾ 이 중 절차적 권리에 환경정보접근권²⁰⁶⁾이 포함될 수 있다. 환경정보 없이는 환경권을 주장·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환경정보에 대한 권리는 환경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²⁰⁷⁾ 환경정보를 통하여 현상태를 파악하여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를 비로소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은 일반적인 알 권리 차원을 넘어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제이다.²⁰⁸⁾ 그렇다면 환경정보접근권은 절차적 권리로서 환경권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1)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환경권

환경권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 기본권 체계 내에서 환경권의 성격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자유권에 해당한다는 견해, 사회권에 해당한다는 견해, 자유권과 사회권적 성격을 모두 갖는 종합적 기본권이라고 보는 견해, 환경권은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²⁰⁹⁾ 헌법재판소는 환경권을 종합적 기본권으로 본다.²¹⁰⁾

사견으로는 ‘환경권은 사실상 모든 기본권의 전제조건이므로 모든 기본권과 성질을 공

205) 사전예방적 측면과 사후구제적 측면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한상운/정우현/염정윤/서은주, 환경권의 실체적 구현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KEI 정책보고서 2020-0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15면 참조.

206) 다른 문헌에서는 환경정보액세스권, 환경정보의 접근권, 또는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권 등의 표현도 쓰이고 있다고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지선, 환경정보공개에 관한 공법적 검토 - 환경정보에 대한 상시적 접근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서울법학, 제21권 제3호, 2014, 46-47면 참조.

207) 김현준, 環境情報에 대한 接近·利用權 - 오르후스협약 제1기둥의 내용과 시사점 -, 토지공법연구, 제37집 제2호, 2007, 353면 참조.

208) 김현준, 環境情報에 대한 接近·利用權 - 오르후스협약 제1기둥의 내용과 시사점 -, 토지공법연구, 제37집 제2호, 2007, 353면 참조.

209) 김찬희, 환경권의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헌법재판심사기준 2022-C-2, 헌법재판연구원, 2022, 12면 참조.

210)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바, 환경권은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헌재 2020. 3. 26. 2017헌마1281, 공보 282, 546, 548 ; 헌재 2008. 7. 31. 2006헌마711, 판례집 20-2상, 345, 357 등 참조.

유한다. 또한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전제로 한, 권리와 의무가 복합된 형태이므로 그에 맞는 성격규명이 필요할 뿐 환경권의 법적 성격을 자유권·사회권·인격권 등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의미가 크지 않고 종합적 기본권으로 평가해야 한다²¹¹⁾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적 이익을 누릴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요구할 권리의 전제가 되는 환경정보접근권 역시 종합적 기본권인 환경권의 한 축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2) 「환경정책기본법」

한편 환경정보접근권이 환경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데 힘을 실어주는 법률적 단초도 있다. 「환경정책기본법」²¹²⁾에 따르면, 국가는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²¹³⁾ 또한 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²¹⁴⁾ 하고,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²¹⁵⁾ 동법의 목적이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제1조) 하는 것이어서 동법은 헌법이 규정한 환경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보’에 관한 내용이 동법에 여러 차례 명시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환경정책기본법」에 기업의 의무와 역할이 특별히 언급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기업이 생성·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도 환경정보접근권을 주장할 수 있

211) 환경권을 종합적 기본권이라고 보는 학설에 대한 설명으로, 이현환, 대한민국 헌법사전 [증보판], 박영사, 2023, 1450-1451면 참조.

212)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여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의2)는 점에서 중요한 법률이다.

213)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제2조 제2항

제2조(기본이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214)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제24조 제1항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15)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제26조 제1항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동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²¹⁶⁾ 또한 기업을 포함한²¹⁷⁾ 모든 국민이 국가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²¹⁸⁾²¹⁹⁾ ‘사업자’의 책무를 별도로 규정한 제5조²²⁰⁾는 기업이 환경보전에 협력할 의무를 특별히 강조한 규정이다.

3) 환경 정보 접근, 대중 참여, 정의 접근에 관한 협약 (오르후스협약)

환경정보접근권의 중요성은 환경권과 인권을 연결한 것으로 평가되는²²¹⁾ 유엔 유럽경제위원회의 ‘환경 정보 접근, 대중 참여, 정의 접근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이하 ‘오르후스협약’이라 한다)²²²⁾²²³⁾에도 잘 드러나 있다. 오

216)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제2조 제1항

제2조(기본이념) ①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7) ‘국민’에는 법인인 기업도 포함된다. 본 연구보고서 64-65면 참조.

218)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제6조 제2항 및 제3항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19) 동법 제40조에도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제40조

제40조(자연환경의 보전)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20)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제5조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221) Robert Cox, 김남수/김찬국/황세영 옮김, 환경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143면 참조.

222) ‘유럽의 환경(Environment for Europe)’에 대한 논의 절차의 일부로 1998년 6월 25일 덴마크의 오르후스시에서 열린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Robert Cox, 김남수/김찬국/황세영 옮김, 환경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144-145면 참조.

223) 오르후스협약 당사국은 2024. 06. 03.을 기준으로 47개이며, 유엔 유럽경제위원회의 회원국이 주축을

르후스협약의 목적은 “현세와 후세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환경문제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사법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²²⁴⁾하는 것이다(동협약 제1조). 목적 조항에 드러난 바와 같이 환경정보접근권은 오르후스협약에 의하여 강조되는 세 가지 권리 중 하나이고, 동협약 제4조 및 제5조에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오르후스협약 제4조 및 제5조는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각 당사국은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사업자들이 그들의 활동과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정기적으로 대중에게 알리도록 장려하되, 적절한 경우 자발적인 체제 내에서 환경마크나 환경 감사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장려한다.”(동협약 제5조 제6항)²²⁵⁾고 하여 환경정보접근권을 더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참여도 필요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각 당사국은 소비자들이 현명한 친환경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충분한 제품정보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한다.”(동협약 제5조 제8항)²²⁶⁾고 하여, 소비자가 환경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동조항은 소비자의 환경정보접근권을 명시한 동시에, 기본적으로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기업임을 감안하면, 환경정보접근권의 보장에 있어 기업의 역할을 한 번 더 환기한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오르후스협약의 당사국은 아니나, 유엔이 후원한 일 가운데 ‘환경민주주의’ 범주에서 가장 야심 찬 모험이라고 불리는²²⁷⁾²²⁸⁾ 동협약이 환경정보접근권

이른다.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13.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Status of Treaties,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IND&mtdsg_no=XXVII-13&chapter=27 (최종방문일 2024. 06. 03.)

224) 국회도서관 번역, ‘환경문제 관련 정보 접근권,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사법 접근권에 관한 협약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2017, 6면 참조.

225) 국회도서관 번역, ‘환경문제 관련 정보 접근권,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사법 접근권에 관한 협약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2017, 21면 참조.

226) 국회도서관 번역, ‘환경문제 관련 정보 접근권,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사법 접근권에 관한 협약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2017, 22면 참조.

227) 김현준, 環境情報에 대한 接近·利用權 - 오르후스협약 제1기등의 내용과 시사점 -, 토지공법연구, 제37집 제2호, 2007, 336면 참조.

228) 이 협약에 관심이 특별히 집중되었던 이유는 “우선 동 협약 제2조 제3항이 ‘환경정보’의 개념을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에서의 ‘정보’의 개념에 비하여 매우 넓게 정의함으로써, 환경문제와 연관성을 갖

을 환경권의 주요 축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또한 비록 오르후스협약의 주요 규율 대상은 공공기관이나, 현대의 리바이어던이라고 불리는 기업의 헌법상 지위와,²²⁹⁾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기후변화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단지 국가를 상대로만 환경정보접근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환경권을 적절히 보호하기 어렵다.

4) 소결

환경정보접근권은 환경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에 해당하여, 환경권의 한 축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환경권이 종합적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점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정보 및 기업의 의무에 관한 조항과 오르후스협약상 관련 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환경권의 내용으로 환경정보접근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헌법상 지위와 기업이 환경보전 노력의무를 지는 주체에 해당한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다음 절(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본다.

한편 환경정보접근권이 환경권의 한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기후공시제도가 부재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국민의 환경정보접근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즉, 국가가 국민의 환경정보접근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될 것이다.

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환경정보접근권이 환경권의 일부라면, 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환경정보접근권의 내용과 행사 역시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후공시와 관련하여서는, 정부가 기후공시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탄소중립기본법 제50조 제2항²³⁰⁾에 명시되어 있

는 정보가 환경정보의 개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정보공개신청이 거부당할 가능성을 사실상 거의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였다. 또한 자신의 이익침해와 관계없이 모든 공공에게 그러한 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주관적 권리의 개념을 유지하여온 다수 국가들에겐 파격적일 수 밖에 없었다.” 현준원, 유럽연합의 공법상 환경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고찰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주법학, 제6권 제1호, 2012, 648면 참조.

229) 다음 절에서 후술한다.

230) 탄소중립기본법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제50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등) ② 정부는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 등 경제주체가 기후

고, 동법 제58조 제1항²³¹⁾에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를 강화하여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위 두 조항이 제정된 2021년 9월부터²³²⁾ 3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기후공시제도를 구체적으로 도입하지 않아 국민의 환경정보접근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앞서 II장에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금융위원회가 설립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2024. 04. 30.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한 상태일 뿐이다.²³³⁾ 기후공시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정부가 3년 가까이 되도록 행정권을 행사하지 않아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면 환경정보접근권을 보호할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²³⁴⁾²³⁵⁾ 특히 환경권에 있어서는 헌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환경보전 노력의무를 지므로, 이러한 행정권의 (불)행사²³⁶⁾는 명문의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도 있다.

위기로 인한 자산손실 등의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231) 탄소중립기본법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재원 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 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32) 특히 공시제도 강화의 경우, 탄소중립기본법의 전신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을 때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존재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9931호, 2010. 1. 13.] 제28조 제4호 참조

제2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등의 강화 및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233) 그러나 이는 ‘초안’에 불과할 뿐이며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이나 도입시기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 금융위원회,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 2024. 04. 22., 3면 참조.

234)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대한 선행연구로, 최규환,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재판심사기준 2022-C-1, 헌법재판연구원, 2022, 18면 참조.

235) 환경권을 실효적으로 보장·보호하기 위하여 종래의 기준보다 강화된 위헌심사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보고서로, 김찬희, 환경권의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헌법재판심사기준 2022-C-2, 헌법재판연구원, 2022 참조.

236) 공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초안을 마련한 점을 고려하면 행정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기후공시 의무를 지우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행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기후공시제도 도입 후 - 기업의 직업의 자유

가. 기후공시제도로 인하여 제한될 기본권

1) 서설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며 발생하는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고,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식별·관리하는 것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알거나 생성하게 되는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의 공개 여부·범위·방법을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이에 기업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면, 영업활동의 내용 내지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데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어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

기후공시로 인해 제한되는 기업의 기본권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예가 없으므로, 다음 목(目)에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특정 정보를 보고·공개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몇 가지 살펴본다.

2)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먼저 2005헌마165등 사건에서, 일간신문의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등 신문사의 경영자료를 신고·공개하도록 규정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 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제2항·제3항²³⁷⁾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신문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자료를 신고·공개토록 하는 것은 일간신문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²³⁸⁾ 법정의견은 청구를 기각하였다.²³⁹⁾ 위

237) 이후 동법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85호, 2009. 7. 31.로 전부개정되며, ‘자료의 신고 등’을 규율하는 조항은 삭제되었다.

238)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판례집 18-1하, 337, 393 참조.

239) “오늘날 기업은 더 이상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힌 사회적 조직체이므로 그 현황과 활동상황을 투명하게 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문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하여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 소유구조는 물론 경영활동에 관한 자료를 신고·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그 투명성을 높이고 신문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한편 위와 같은 추가자료들에 대한 신고·공개를 통하여 독자나 광고주는 신문기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선호에 맞는 신문을 보다 잘 선택할 수 있게 되며,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조항은 ‘기업’의 ‘경영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기후공시제도와 공통된다.

다음으로 2019헌마288 사건에서는, 가맹본부²⁴⁰⁾가 가맹희망자²⁴¹⁾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²⁴²⁾에 차액가맹금²⁴³⁾²⁴⁴⁾과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86호, 2018. 04. 03.]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제5호 (나)목 2) 및 제6호 가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위 시행령 규정으로 인해 제한되는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기본권은 직업수행의 자유라고 보았고,²⁴⁵⁾ 청구를 기각하였다. 특정인에게나마 영업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지우는 공권력의 행사가 문제되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또한 2021헌마374등 사건에서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대상’²⁴⁶⁾ 진료비용을 보고·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신문기업의 경영활동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신문의 전체 발행부수 등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신고·공개하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신문법 제16조의 자료신고와 공개는 신문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하고, 구독자와 광고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정당화된다.” 현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판례집 18-1하, 337, 393 참조.

24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47호, 2018. 03. 27.] 제2조 제2호 및 제1호 참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4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47호, 2018. 03. 27.] 제2조 제4호 참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

242)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47호, 2018. 03. 27.] 제2조 제10호 참조.

243) 가맹금이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47호, 2018. 03. 27.] 제2조 제6호 참조.

244)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말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86호, 2018. 04. 03.] 제4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나)목 2) 참조.

245) 현재 2021. 10. 28. 2019헌마288, 판례집 33-2, 475, 487 참조.

246) 비급여 대상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와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라 의료급여대상 기준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7772호, 2020. 12. 29.] 제41조 제4항 참조.

공개하도록 하는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과 보건복지부 고시인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다투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위 「의료법」 조항에 따르면 의사가 진료과정에서 취득한 환자의 진료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국가에 보고하도록 강제되고 있으므로 의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았다.²⁴⁷⁾ 또한 “의사가 어떠한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얼마의 비용을 받고 진료를 하였는지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일종의 영업정보로서, 이러한 영업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방법 등은 의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하면서, 위 보건복지부 고시 조항에 따라 국가가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았고,²⁴⁸⁾ 청구를 기각하였다. 2021헌마374등 사건 역시 직업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지우는 공권력의 행사가 문제되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247) 헌재 2023. 2. 23. 2021헌마374등, 판례집 35-1상, 308, 319 참조.

248) 헌재 2023. 2. 23. 2021헌마374등, 판례집 35-1상, 308, 319 참조.

249) 청구인들은 진료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강제되어 의사의 양심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업적 의무(의료법 제19조의 정보누설금지 등)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의사 자신의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이 개입된다거나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된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심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헌재 2023. 2. 23. 2021헌마374등, 판례집 35-1상, 308, 320 참조.

3) 소결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앞서 언급한 여러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비추어볼 때,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며 알거나 생성하게 되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기후공시제도는 기업의 기본권 중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²⁵⁰⁾

또한 기업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적·비재무적 정보를 기후공시제도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내키지 아니하는 일을 하지 아니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다른 모든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보충적인 기본권이 되며, 다른 기본권이 특별 기본권으로서 우선하여 적용되므로,²⁵¹⁾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는 이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적·비재무적 정보’는 그 내용이 ‘단순한 사실관계’이므로 그 자체로는 어떠한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사죄 내지 사과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 제한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²⁵²⁾ 그리고 단순히 기후공시제도로 인해 이윤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 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므로²⁵³⁾²⁵⁴⁾²⁵⁵⁾ 재

250) 기후공시제도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적·비재무적 정보’를 단순히 ‘공시’할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51)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23, 260면 참조.

252) 헌재 2002. 1. 31. 2001헌바43, 판례집 14-1, 49, 56 참조.

253)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23, 580면 참조.

254) 이러한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은 원래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기업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최저액을 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제한 받는 결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늘어나거나 생산성 저하, 이윤 감소 등 불이익을 겪을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관한 것으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 헌재 2019. 12. 27. 2017헌마1366등, 판례집 31-2하, 270, 272 참조.

255) 이러한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로, “이 비율조항으로 인해 이 사건 제품들의 참가비율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그 판매량이 감소될 것이 비록 예상되지만 이로써 초래되는 영업이익의 감소는 법개정으로 인한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서 이로 인해 증감되는 영업이익은 장래의 불확실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제품들의 판매부진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이 사건 제품들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포기함으로써 초래되는 재산적 손실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36-137 참조.

산권 제한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정리하면, 기후공시제도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업의 기본권은 직업수행의 자유일 것이다.

나. 기후공시제도의 위헌성 판단 시 고려사항

1) 기업의 헌법상 지위

가) 서설

기업의 지위는 기업이 활동하는 국가와 시대 배경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기업의 지위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²⁵⁶⁾ 과거에는 국가를 일방적인 규제의 주체로서 기업의 자유를 제한·침해하는 권력으로 보았다. 이에 국가의 부당한 규제로부터 기업을 보호하여 기업의 경쟁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와 함께, 기업 역시 국가가 조화롭게 운영될 책임과 객관적 질서를 존중할 의무를 부담한다.²⁵⁷⁾ 오늘날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취하는 규제 완화 수단은 단순 ‘탈규제’가 아니라, 다양하고 유연한 ‘조종’이라고 볼 수 있다.²⁵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을 끼치고, 국가의 경제 발전과 사회의 수요 충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²⁵⁹⁾ 기업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주체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의 부를 증진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고, 재화·용역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사회자원을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²⁶⁰⁾ 그러나 기업의 성장이 극으로 치달아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²⁶¹⁾ 기업은 당초 영리 추구가 본질이므로 경제력의 집중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여 사회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²⁶²⁾ 나아가 회사의 규모가 방대해지다 보면 정부까지 움직일 수 있는 강대한 영향력을 구축하여 금융 기타 사회의 자원을 과점하고,

256) 성봉근, 기업의 헌법상 지위변화와 기업 활동의 자유와 한계, 유럽헌법연구, 제21호, 2016, 297면 참조.

257) 성봉근, 기업의 헌법상 지위변화와 기업 활동의 자유와 한계, 유럽헌법연구, 제21호, 2016, 299,333면 참조.

258) 성봉근, 기업의 헌법상 지위변화와 기업 활동의 자유와 한계, 유럽헌법연구, 제21호, 2016, 333면 참조.

259) 이세주, 기업의 경제활동 보장과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이론과 실무 2014-A-4, 헌법재판연구원, 2014, 132면 참조.

260) 이철송, 상법강의, 박영사, 2022, 213면 참조.

261) 이철송, 상법강의, 박영사, 2022, 213면 참조.

262) 이철송, 상법강의, 박영사, 2022, 213면 참조.

심지어는 각종 경제법령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개정하게 하여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²⁶³⁾ 이러한 측면에서 회사는 현대의 리바이어던(leviathan)으로 비유되기도 한다.²⁶⁴⁾

나) 한국 헌법과 기업의 헌법화

서구에서는 규모가 큰 기업을 단순한 사적 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며, 기업이 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헌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왔다.²⁶⁵⁾²⁶⁶⁾ 한편 대한민국 헌법에는 기업이 경제질서의 주요축이 된다는 점이 일찍이 명시되어, 기업의 헌법적 책임과 의무에 관한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²⁶⁷⁾ 한국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경제에 관한 독립된 장, 즉 경제헌법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독특한 헌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²⁶⁸⁾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의 기본을 규율한 조항의 경우, 1980년 제8차 개정헌법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제120조 제1항)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행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제119조 제1항)고 하여, 이전 헌법까지는 경제질서의 중요 구성축으로 개인만이 언급되었으나, 이후에는 기업도 헌법상 경제질서를 구성하는 핵심적 구성축으로 포섭된다.²⁶⁹⁾ 이처럼 기업이 경제질서의 구성축이 된다는 점이 헌법에 명시되었다는 것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하여 국민경제적 과제를 해결할 헌법적 필요성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⁷⁰⁾

263) 이철송, 상법강의, 박영사, 2022, 213면 참조.

264) 이철송, 상법강의, 박영사, 2022, 213면 참조.

265) 이러한 배경에서 기업을 ‘민간 정부(private government)’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Arthur S. Miller, The Corporation As a Private Government in the World Community, Virginia Law Review, vol. 46 no. 8, 1960, pp.1571-1572 ; Arthur S. Miller, “Constitutionalizing” the Corpor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vol. 22 issue 2, 1982 ; Reza Dibadj, (Mis)Conceptions of the Corporation, Georgia State University Law Review, vol. 29 no. 3, 2013

266) 미국에서는 18세기까지만 해도 운송, 도로, 수도, 은행 등 공공 서비스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회사 설립을 허가하였다. 19세기 중반까지 허가 범위가 점차 넓어졌지만, 그럼에도 회사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공익성을 실현할 것이 요구되었다. 신현탁, 회사제도의 상상력 : 시장 자율과 ESG 경영, 박영사, 2023, 116면 참조.

267) 김중철, ESG의 민주공화헌법적 기초, 사회적가치 이슈페이퍼 22-19-2, 한국법제연구원, 2022, 54면 참조.

268) 김중철, ESG의 민주공화헌법적 기초, 사회적가치 이슈페이퍼 22-19-2, 한국법제연구원, 2022, 54면 참조.

269) 김중철, ESG의 민주공화헌법적 기초, 사회적가치 이슈페이퍼 22-19-2, 한국법제연구원, 2022, 54면 참조.

270) 김중철, ESG의 민주공화헌법적 기초, 사회적가치 이슈페이퍼 22-19-2, 한국법제연구원, 2022, 54면 참조.

기업이 경제질서의 주요 구성축이라면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받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르는 공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²⁷¹⁾

또한 현행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국가가 사회의 정의와 공정한 경제질서를 세우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²⁷²⁾ 그러므로 경제영역에서 시장 지배력을 통하여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기업의 경우, 즉 국가와 유사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헌법이 추구하는 공공복리에 적합한 공공질서 조성 책무를 국가와 함께 부담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²⁷³⁾ 이러한 관점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경영은 단순히 윤리적·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헌법 가치질서에 따른 책무라고 볼 수 있다.²⁷⁴⁾

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상법 제169조에 의하면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회사의 영리성²⁷⁵⁾은 특히 주식회사에서 그 사원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나타나며, 여기서 회사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과, 주주이익의 관계가 문제된다.²⁷⁶⁾ 회사는 주주, 채권자, 근로자, 거래처, 지역주민,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결합된 것이라는 입장에서는 그 모든 이해관계의 총합으로서 ‘회사이익’을 생각한다.²⁷⁷⁾ 이러한 회사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유력한 방법은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²⁷⁸⁾ 주주는 다른 권리자의 권리를 만족시키고 난 후 남은 잔여에 대한 권리를 가지므로, 그 잔여를 극대화할 인센티브가 있다.²⁷⁹⁾

최근에는 기업을 이해함에 있어 영업주체로서의 성격과 함께 공공적 성격을 가진

271) 김종철, ESG의 민주공화헌법적 기초, 사회적가치 이슈페이퍼 22-19-2, 한국법제연구원, 2022, 54면 참조.

272) 김종철, ESG의 민주공화헌법적 기초, 사회적가치 이슈페이퍼 22-19-2, 한국법제연구원, 2022, 63면 참조.

273) 김종철, ESG의 민주공화헌법적 기초, 사회적가치 이슈페이퍼 22-19-2, 한국법제연구원, 2022, 63면 참조.

274) 김종철, ESG의 민주공화헌법적 기초, 사회적가치 이슈페이퍼 22-19-2, 한국법제연구원, 2022, 63면 참조.

275) 회사는 기본적으로 영리법인이므로 영리추구는 회사의 기본적인 성격이다. 회사의 속성인 영리추구를 회사의 목적으로 삼으면 순환논리에 빠져든다는 지적으로, 신현탁, 회사제도의 상상력 : 시장 자율과 ESG 경영, 박영사, 2023, 122면 참조.

276)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22, 706면 참조.

277)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22, 707면 참조.

278)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22, 707면 참조.

279)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22, 707면 참조.

사회적 실체로서의 성격도 강조하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²⁸⁰⁾ 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영향력이 계약상 이해관계자인 경영진, 주주, 채권자, 종업원과의 관계를 훨씬 넘어서까지 미치기 때문이다.²⁸¹⁾ 회사라는 형태는 특히 대규모 사업에 적합하므로 이에 상응하여 회사가 야기하는 사회적 피해 역시 대규모로 나타난다.²⁸²⁾ 막강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이 통제되지 않으면, 기업은 환경 악화, 인권 침해 등 사회적으로 해로운 행위에 관여할 수 있다.²⁸³⁾ 게다가 회사 형태의 본질적 특성인 유한책임은 회사의 활동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초래되는 비용의 일부만을 부담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²⁸⁴⁾

기업이 오늘날 경제체제에서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거나, 기업의 극단적인 이윤의 추구로 인하여 사회병리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이익추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등, 기업은 사회에 대하여 공익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이론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이라고 한다.²⁸⁵⁾ 한편 사회적 책임론을 통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전략을 세우는 것은 전통적인 회사법 이론에 의하더라도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²⁸⁶⁾ 일반적으로 회사법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주이익’은 장기적인 것이며 무형적인 이익도 모두 고려하는 개념이기²⁸⁷⁾ 때문이다. 즉, 회사의 공익적 행위가 회사의 실적에 도움이 되어²⁸⁸⁾ 궁극적으로 회사의 주주의 이익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다.

라) 회사의 목적으로 ‘주주후생 극대화’

한편 회사의 목적이 주주‘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주주‘후생’ 극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²⁸⁹⁾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회사가 사업을 하며 발생시키는 부정적 의

280)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22, 707면 참조.

281) Reinier Kraakman et al., 김건식 외 편, 회사법의 해부, 소화, 2020, 182면 참조.

282) Reinier Kraakman et al., 김건식 외 편, 회사법의 해부, 소화, 2020, 182면 참조.

283) Reinier Kraakman et al., 김건식 외 편, 회사법의 해부, 소화, 2020, 182면 참조.

284) Reinier Kraakman et al., 김건식 외 편, 회사법의 해부, 소화, 2020, 182면 참조.

285)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22, 707면 참조.

286)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22, 708면 참조.

287)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22, 708면 참조.

288) 권재열, 한국 회사법의 경제학, 마인드맵, 2017, 43면 참조.

289)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올리버 하트(Oliver Hart) 등의 견해이다. 신현탁, 회사제도의 상상력 : 시장 자율과 ESG 경영, 박영사, 2023, 122면 참조.

부효과를 스스로 책임지고 비용을 지출하여 해소하여야 하며, 이로써 당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주주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²⁹⁰⁾ 주주‘후생’ 극대화 개념은 사회적 가치 및 이해관계자 이익을 아우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ESG 경영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²⁹¹⁾

재무적 관점에서 당장 주주이익 극대화를 실현하기보다,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도 추구함으로써 장기적인 주주후생 극대화를 지향하겠다는 것이 ESG 경영을 선택한 주주의 결단이다.²⁹²⁾ 경영진은 주주의 의사에 따라 ESG 경영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증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회사의 목적과 정체성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²⁹³⁾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비용 증가 등의 손실은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이며, 그 대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장기적·간접적으로 주주이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²⁹⁴⁾

ESG 경영이 제시하는 이러한 자본주의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과 경제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우리 헌법에도 부합한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심화된 상황에서 ESG 경영을 통하여 개인의 이익 극대화가 아닌 공동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되기²⁹⁵⁾ 때문이다.

2) 헌법 제35조 제1항: 기업의 환경보전 노력의무

헌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환경을 보전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환경을 보전하기

290) 그 지저에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방지하면 이는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되어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당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에도, ‘각 회사가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사회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1970년대 밀턴 프리드먼 방식의 낙관론이 무비판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신현탁, 회사제도의 상상력 : 시장 자율과 ESG 경영, 박영사, 2023, 122면 참조.

291) 신현탁, 회사제도의 상상력 : 시장 자율과 ESG 경영, 박영사, 2023, 123면 참조.

292) 신현탁, 회사제도의 상상력 : 시장 자율과 ESG 경영, 박영사, 2023, 127면 참조.

293) 신현탁, 회사제도의 상상력 : 시장 자율과 ESG 경영, 박영사, 2023, 127면 참조.

294) 신현탁, 회사제도의 상상력 : 시장 자율과 ESG 경영, 박영사, 2023, 127면 참조.

295) 신현탁, 회사제도의 상상력 : 시장 자율과 ESG 경영, 박영사, 2023, 133면 참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필수적이어서 국민 역시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²⁹⁶⁾ 이는 다른 기본권의 헌법 규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²⁹⁷⁾ 또한 헌법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것은 결국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해서라도 자연환경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이고,²⁹⁸⁾ 이는 환경권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가와 국민의 의무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의 환경보전의무에 있어, 자연인인 국민뿐만 아니라 법인인 기업 역시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헌법상 환경을 보전할 의무를 진다.²⁹⁹⁾ 구체적인 법질서에 의해서 형성된 ‘국민’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자연인과 법인이 ‘규범적 일원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³⁰⁰⁾ 기업의 환경보전 의무가 헌법 제35조 제1항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객관적 규범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그 규범질서가 정하는 내용에 따라 사회생활을 영위함으로써 통합을 실현시킬 책임과 의무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부담한다³⁰¹⁾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3) 경제헌법

직업수행의 자유 등 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할 때는 헌법 제119조에 규정된 경제질서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³⁰²⁾ 헌법은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사회정의, 공정한 경쟁질서, 경제민주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임을 밝히고 있다.³⁰³⁾ 입법자는 경제현실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전망, 목적

296) 김중철, ESG의 민주공화헌법적 기초, 사회적가치 이슈페이퍼 22-19-2, 한국법제연구원, 2022, 40면 참조.

297)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23, 512면 참조.

298)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4, 518면 참조.

299) 김중철, ESG의 민주공화헌법적 기초, 사회적가치 이슈페이퍼 22-19-2, 한국법제연구원, 2022, 40면 참조.

300)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긍정설 중 법실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4, 278면 참조.

30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긍정의 합리적 논거에 관한 설명으로,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4, 281면 참조.

302) 헌재 2018. 6. 28. 2016헌바77등, 판례집 30-1하, 496, 513 참조.

303) 헌재 2018. 6. 28. 2016헌바77등, 판례집 30-1하, 496, 513 참조.

달성에 소요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 당해 경제문제에 관한 국민 내지 이해관계인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의 민주화 달성 등의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정책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정책을 선택할 수 있고, 입법자의 그러한 정책판단과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경제에 관한 국가적 규제·조정권한의 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³⁰⁴⁾

환경권은 자유권의 행사에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다른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헌법적 법익으로서 고려된다.³⁰⁵⁾ 환경권은 특히 경제생활에 관한 기본권 행사의 한계로서의 의의와 기능을 가진다.³⁰⁶⁾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은 환경보호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따라서 국가의 환경보호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³⁰⁷⁾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국가의 환경보호 정책의 본질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을 규제·조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많은 경우에는 이익을 얻는 자와 손해를 입는 자가 동시에 생긴다.³⁰⁸⁾³⁰⁹⁾ 따라서 환경권은 영업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한계가 되기도 한다.³¹⁰⁾

한편 환경권이 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자유에 우선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³¹¹⁾³¹²⁾ 89헌마214등 사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되었다.³¹³⁾ 법정의견은 위헌이라고 보았으나, 재판관 이영모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헌법 제35조)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실현에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사유재산권인 토지소유권을 행사하는 경

304) 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판례집 15-2상, 1, 15 참조.

305) 환경권은 자유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헌법적 법익이라는 견해로, 한수용, 헌법학, 법문사, 2020, 1069면 참조.

30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4, 519면 참조.

30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4, 519면 참조.

308)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4, 519면 참조.

309) 국가의 환경보전 정책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권행사를 제한하게 된다. 한수용, 헌법학, 법문사, 2020, 1069면 참조.

310) 환경보호 과제가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위상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은 또한 환경보호 정책에 대한 한계가 된다.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23, 516면 참조.

311) 김찬희, 환경권의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헌법재판심사기준 2022-C-2, 헌법재판연구원, 2022, 28-29면 참조.

312) 김홍균, 환경판례의 이상과 현실, 환경법연구, 제42권 제2호, 2020, 2면 참조.

313)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판례집 10-2, 927, 927-928 참조.

제적 자유보다 우선하는 지위에 있다.”³¹⁴⁾는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대법원 판례 중에도 환경상 이익이 경제적 이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인정한 예가 있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1665 판결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한 후에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위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내려진 레미콘공장 입지조정명령이 적법한지 다투어졌다. 재판부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주민들의 권리라는 한 차원 높은 가치를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입지조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보았다.³¹⁵⁾

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 법정의견에 더하여, “환경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권리로서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는 권리로까지 해석될 수 있고, 환경의 보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과 동시에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면,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취지의 법규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해석은 어디까지나 환경보전에 관한 헌법과 환경관련 법률의 이념에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합목적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지 이를 도외시한 채, 법규의 형식적인 자구나 그것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점에 집착하여 환경보전의 이념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는 보충의견이 개진되었다.³¹⁶⁾

4) 법익균형성 판단 시 고려사항

기후공시제도로 인하여 기업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위헌성 판단 심사기준으로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할 경우 그 하위 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본 목(目)에서는 위 하위 원칙이 충족되어 법익의 균형성을 검토하는 단계에 이

314)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판례집 10-2, 927, 969 참조.

315)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1665 판결 [공장설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공1996.9.1.(17),2512]

316) 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집47(2)특, 182; 공1999.9.15.(90),1889]

르렸을 때 고려할 점을 살펴본다.

먼저, 다른 기본권 제한 수단에 비하여 공시가 갖는 이점이 있다. 기후공시제도는 시장 왜곡이 적은 수단이다. 국가가 기업의 사업활동에 세세히 간섭하거나, 기업에게 특정한 목표를 정하여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 왜곡은 적은 반면, 공시를 활성화하는 것은 해당 공시 내용과 관련된 기업 활동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가장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³¹⁷⁾라는 점이 법의 균형성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직업의 자유 제한의 위헌성을 판단하며 실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체의 이익’이 긴요할수록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허용되는 정도가 높아진다. ‘직업활동이 사회전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에 따라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허용되는 정도는 달라지며, 개인의 직업활동이 타인의 자유영역과 접촉하고 충돌할수록 입법자가 타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더 수인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³¹⁸⁾ 실시한 바 있다.

다. 소결

기후공시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은 직업의 자유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경제활동은 광범위한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경제질서의 한 축을 이루는 주체로서 공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 헌법 제35조 제1항의 해석상 기업도 환경보전 노력 의무가 있다는 점, 경제헌법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체계의 특수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317) 노종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주주제안 사례, 경제개혁연구소, 연구보고서, 2021, 20면 참조.

318) 헌재 2020. 10. 29. 2019헌바249, 판례집 32-2, 389, 401 ; 헌재 2005. 3. 31. 2001헌바87, 판례집 17-1, 321, 331 ; 헌재 2002. 10. 31. 99헌바76등, 판례집 14-2, 410, 433 참조.

V. 결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195개의 당사국이 참여한 파리협정 제2조는 파리협정의 목적이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온실가스 저배출 및 기후 회복적 발전(climate-resilient development)이라는 방향에 부합하는 재정 흐름’을 조성하기로 한다고 선언한다.³¹⁹⁾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해온 기업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일 수 있지만, 더 이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기후변화가 재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비재무적으로는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해나가야 한다. 기후공시제도는 기업에게 이러한 재무적·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후공시가 아직 의무화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2024년 3월 기후공시규칙(Climate Disclosure Rule)을 도입하였고, 이와 관련된 논의가 우리나라보다 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후공시규칙이 상업적 표현을 강요하여 수정헌법 제1조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과, 불충분한 기후공시규칙을 수립함으로써 증권거래위원회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등이 개진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 체계 안에서 기후공시제도와 관련된 쟁점이 전개될 방향은 미국에서의 논의 흐름과는 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기후공시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한 경우와, 기후공시제도가 도입되었을 경우를 나누어 기후공시제도의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전자의 경우에는 국민의 환경정보접근권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환경정보접근권을 환경권의 한 축으로 보고, 기업이 생성·보유·관리하는 환경정보에 대하여도 환경정보접근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면, 환경정보접근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정도의 행정권 (불)행사는 헌법에 위반된다. 다음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기업이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319) 법제처 번역, 국제연합(UN)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다자조약 제2315호, 발효일 2016. 12. 3.],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 참조.

그 위헌성 판단시 기업의 헌법상 지위, 기업이 환경보전 노력의무를 진다는 점, 헌법 제 119조의 의미와 환경권과의 관계, 공동체의 이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은 산업활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산업활동의 주체인 기업의 역할이 중추적이라는 의미이다. 국가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라는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는 기후공시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강승식, 미국 헌법학 강의, 궁리출판, 2007.
- 권재열, 한국 회사법의 경제학, 마인드맵, 2017.
- 김병연/박종철/정웅채, ESG 경영과 법률, 정독, 2021.
-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23.
- 성희활, 자본시장법 강의, 서울파이낸스앤로그룹, 2022.
-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22.
- 신현탁, 회사제도의 상상력 : 시장 자율과 ESG 경영, 박영사, 2023.
- 이철송, 상법강의, 박영사, 2022.
- 이헌환, 대한민국 헌법사전 [증보판], 박영사, 2023.
- 임재연, 美國證券法, 박영사, 2009.
-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23.
-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0.
-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4.

Kraakman, Reinier et al., 김건식 외 편, 회사법의 해부, 소화, 2020.

Robert Cox, 김남수/김찬국/황세영 옮김, 환경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Krotoszynski Jr., Ronald J. et al., First Amendment : Cases and Theory, 2nd ed.,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3.

2. 논문

- 구지선, 환경정보공개에 관한 공법적 검토 - 환경정보에 대한 상시적 접근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서울법학, 제21권 제3호, 2014, 31-66면.
- 김경일, 일본의 ESG 정보공시와 그 시사점,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99호, 2022, 1-35면.

- 김수연/이태, 미국 SEC 기후공시 규칙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학연구, 제32권 제3호, 2022, 105-133면.
- 김정민, 환경법 원칙 중 지속가능발전 원칙의 구체화에 대한 연구 : 지속가능성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4.
- 김현준, 環境情報에 대한 接近 · 利用權 - 오르후스협약 제1기동의 내용과 시사점 -, 토지공법연구, 제37집 제2호, 2007, 335-358면.
- 김현준, 환경헌법주의 -서설적 검토, 사법, 통권 52호, 2020, 77-111면.
- 김홍균, 환경판례의 이상과 현실, 환경법연구, 제42권 제2호, 2020, 1-45면.
- 성봉근, 기업의 헌법상 지위변화와 기업 활동의 자유와 한계, 유럽헌법연구, 제21호, 2016, 289-342면.
- 심원태, 국내 ESG 공시제도 현황, BFL(Business Finance Law), 제109호, 2021, 16-28면.
- 오성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정보에 관한 공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 101-143면.
- 이노홍, 상업적 광고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론 재검토, 흥익법학, 제17권 제1호, 2016, 213-244면.
- 인소영/박기영, 기후변화의 경제학, 한국경제학보, 제28권 제1호, 2021, 137-199면.
- 정준혁, ESG와 회사법의 과제, 상사법연구, 제40권 제2호, 2021, 13-81면.
- 현준원, 유럽연합의 공법상 환경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고찰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아주법학, 제6권 제1호, 2012, 639-670면.
- Adler, Jonathan H., Compelled Commercial Speech and the Consumer Right to Know, Arizona Law Review, vol. 58 no. 2, 2016, pp.421-477.
- Choi, Michael M. / Michael Barsa, Can We Talk Climate? The SEC Disclosure Rule and Compelled Commercial Speech, Environmental Law Reporter, vol. 53 no. 12, 2023, pp.10934-10957.
- Dibadj, Reza, (Mis)Conceptions of the Corporation, Georgia State University Law Review, vol. 29 no. 3, 2013, pp.731-782.
- Drury III., Lloyd L., Disclosure Is Speech: Imposing Meaningful First Amendment Constraints on SEC Regulatory Authority, South Carolina Law Review, vol.

- 58 no. 4, 2007, pp.757-788.
- Georgiev, George S., The SEC's Climate Disclosure Rule: Critiquing the Critics, Rutgers Law Record, 50, 2022, pp.101-130.
- Goodman, Ellen P., Visual Gut Punch: Persuasion, Emotion, and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Graphic Disclosure, Cornell Law Review, vol. 99 no. 3, 2014, pp.513-570.
- Griffith, Sean J., What's "Controversial" About ESG? A Theory of Compelled Commercial Speech Under the First Amendment, Nebraska Law Review, vol. 101 no. 4, 2023, pp.876-944.
- Mariani, Samantha M.,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Matters: Can the SEC Mandate Disclosure? Should the SEC Mandate Disclosure?. Notre Dame Journal of Law, Ethics & Public Policy, vol. 37 no. 1, 2023, pp.369-395.
- Miller, Arthur S., "Constitutionalizing" the Corpor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vol. 22 issue 2, 1982, pp.95-107.
- Miller, Arthur S., The Corporation As a Private Government in the World Community, Virginia Law Review, vol. 46 no. 8, 1960, pp.1539-1572.
- Montoya, Melissa N / Colleen Judge-Golden / Jonas J Swartz, The Problems with Crisis Pregnancy Centers: Reviewing the Literature and Identifying New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Women's Health, vol. 14, 2022, pp.757-763.
- Schauer, Frederick, The Boundaries of the First Amendment: A Preliminary Exploration of Constitutional Salience, Harvard Law Review, vol. 117 no. 6, 2004, pp.1765-1809.
- Semieniuk, Gregor et al., Stranded fossil-fuel assets translate to major losses for investors in advanced economies, Nature Climate Change, 12, 2022, pp.532-550.
- Siebecker, Michael R., Corporate Speech, Securities Regulation, and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the First Amendment, William and Mary Law Review, vol. 48

no. 2, 2006, pp.613-676.

Wolfson, Nicholas, The First Amendment and the SEC, Connecticut Law Review, vol. 20 no. 2, 1988, pp.265-302.

Zschokke, Michael, Compelled Climate Speech,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Online, 2023, pp.1-29.

3. 보고서 기타 자료

경제개혁연구소, 기후변화 관련 기업공시 강화의 배경 및 현황, 연구보고서, 2021-11호, 2021.

금융위원회,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 2024. 04. 2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별첨2, 2021. 01. 14.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 승인’, 외교부 공동보도자료, 2023. 03. 20.

김종철, ESG의 민주공화헌법적 기초, 사회적가치 이슈페이퍼 22-19-2, 한국법제연구원, 2022.

김찬희, 환경권의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헌법재판심사기준 2022-C-2, 헌법재판연구원, 2022.

노종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주주제안 사례, 경제개혁연구소, 연구보고서, 2021.

노종화/이승희, 주요 국가의 주주제안 현황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의 필요성, 경제개혁연구소, 연구보고서, 2023.

노희진 외, 사회책임투자의 원칙과 적용, 자료집, 한국증권연구원, 2006.

법무법인(유) 화우 ESG 센터, SEC,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확정 - Scope 3 의무 제외하고, 중대성 기준 확대를 통해 전반적 완화 -, Legal Update, 2024.

(사)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 국내외 현황, 주요사례 및 시사점, 연구용역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17.

삼일PwC ESG Platform, 미국 SEC 기후 공시 규칙 최종안, 이슈브리프, 삼일회계법인, 2024.

오동재/김소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바로사 가스전 FPSO 설비에 금융 제공 중인 은행들, 보고서, 기후솔루션, 2023.

윤세중/오동재/팽원/송지연,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 화석연료 투자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 기후솔루션, 2021.

이경훈, 미국공시제도의 개요와 운용사례, 연구보고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8.

이세주, 기업의 경제활동 보장과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이론과 실무 2014-A-4, 헌법재판연구원, 2014.

이승준/이승주, 지속가능성 공시의 Scope 3 배출량 관련 이슈, KIRI 리포트 이슈분석, 보험연구원, 2024.

이은선/최유경, ESG 관련 개념의 정리와 이해, 이슈페이퍼 21-19-④, 한국법제연구원, 2021.

이일청, 유엔 시스템과 기업, 기업시민리서치, 8호, 2020.

이장희, 국가의 경제개입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헌법이론과 실무 2014-A-1, 헌법재판연구원, 2014.

정준희, ‘의무’가 된 ESG ... 기후 정보 공시 시대 ‘성큼’, 환경ESG, 2023년 1월호.

최규환,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재판심사기준 2022-C-1, 헌법재판연구원, 2022.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 2021.

한국회계기준원, (공개초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주요 FAQ, 공개초안 붙임자료, 2024. 04. 30..

한상운/정우현/염정윤/서은주, 환경권의 실제적 구현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KEI 정책보고서 2020-0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헌법재판연구원, 낙태를 반대하는 진료소에게 낙태 시술을 안내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세계헌법재판동향 2019 제3호, 세계헌법재판동향 2019-E-3, 2019.

TCFD, 번역본,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의 권고안, 2017.

TCFD, 한국공인회계사회 옮김, 기후변화 관련 재무공시에 관한 태스크포스의 권고안 이행, 2021.

CDP et al., Statement of Intent to Work Together Towards Comprehensive Corporate Reporting, 2020.

FSB, FSB to establish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Press release, 2015. 12. 04.

Griffin, Paul, The Carbon Majors Database CDP Carbon Majors Report 2017, CDP Report, 2017.

TCFD,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17.

TCFD,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21.

기업의 기후공시에 관한
헌법적 연구

- 미국에서의 논의 소개를 포함하여 -

2024年 9月 5日 印刷

2024年 9月 12日 發行

발행: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인쇄: 성문인쇄사(02·2272·7553)

ISBN 979-11-94029-23-6

<비매품>

* 본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